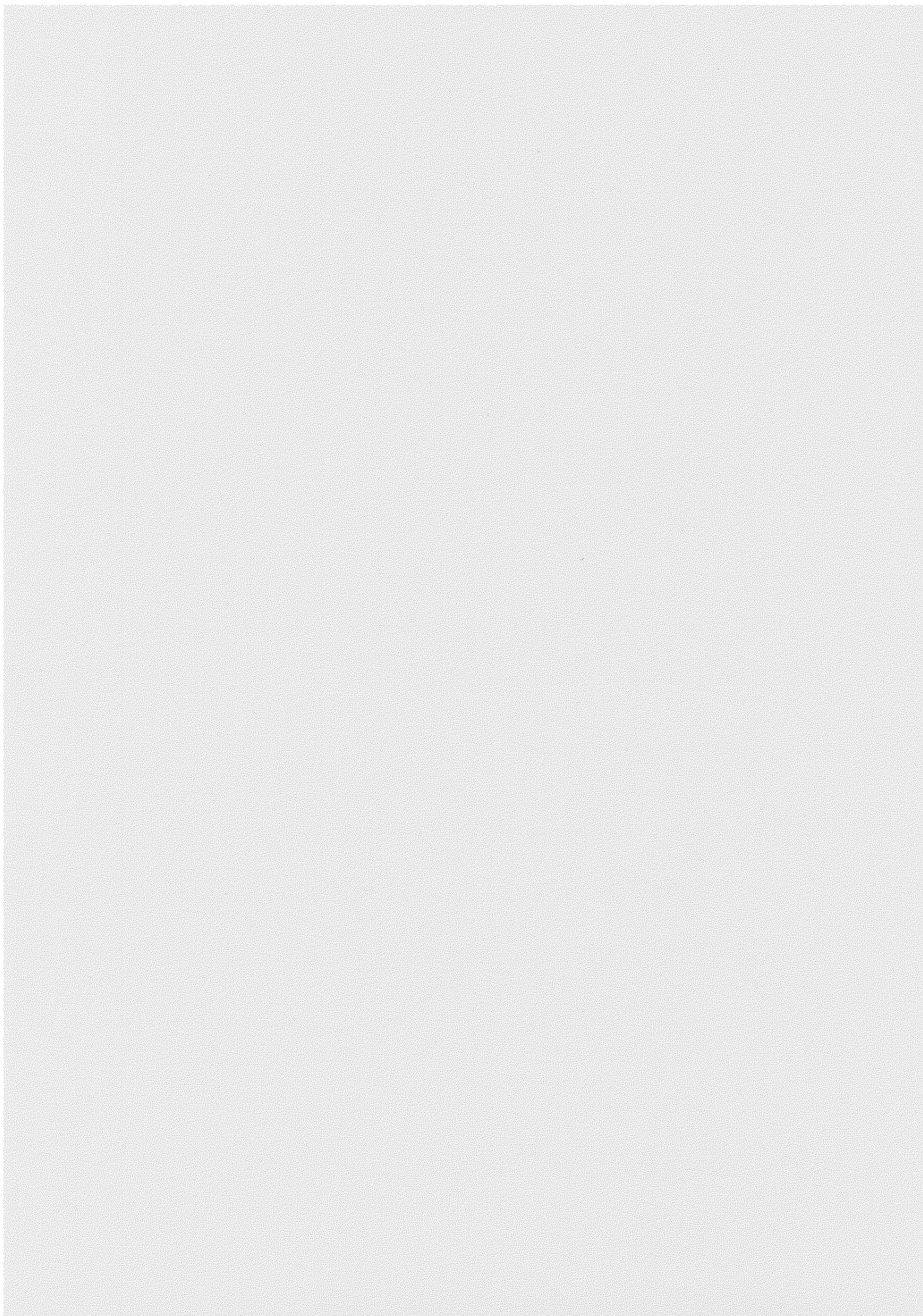


第17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4.12.1. ~ 12.4.)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3
II. 제1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사회) 제1차 본회의	5
III. 제1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사회) 제2차 본회의	11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17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
3.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7
4.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5
5.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37
V. 별 책 부 록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第17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12월 1일 (수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173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0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영구

지금부터 제1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11시 02분 폐회)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12월 1일 (수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7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7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5.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6.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체육과장님께서는 전국체육대회 운영 평가보고회 참석차 출장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김병연 평생교육

1. 경과보고

[제173회-제1차 본회의]

● 의장 고규강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 의사과장 박경석

의사과장 박경석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 11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4년 11월 23일 공고 제 2004-13호로 제1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같은날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72회 정기회 의결안건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개정안은 10월 28일 집행청에 이송하였으며, 11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 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4년 11월 6일 집행청에 이송하였고, 또한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04년 11월 10일 집행청에 이송하고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고규강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7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5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회기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시고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은 소위원회 활동과 의안 관련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12월 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 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2004년도 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7분)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규강 의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5학년도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신설과 원아수 감소로 병설유치원 폐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초등학교 분교장 폐지로 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공교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2004년 9월 개교한 제천 내토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2005년 3월 개교하는 청주 사천초, 죽림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고, 교육여건 개선 일환으로 과대 학교인 청주 덕성초등학교를 분리하고자 청주 사천동 소재에 사천초등학교 설립과 택지개발지구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가경

[제173회-제1차 본회의]

4지구에 죽림초등학교를, 용암2지구에 금천중학교를 2005년 3월에 신설하는 것과 원아수 감소에 따라 괴산 장연초등학교광진분교장 병설유치원 폐지와 농촌 교육발전을 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장연초등학교광진분교장을 폐지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입니다.

본 변경계획은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38억 3,250만원의 사업비로 상당고등학교에 1,420평방미터의 기숙사를 신축하고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와 남일초등학교, 예성초등학교에 3,228평방미터의 다목적교실을 신축하며, 학생종합수련원 보령시설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6억원의 사업비로 아파트 관사 8동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

획변경계획안(별첨 3)

(끝에 실음)

끝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부담수입과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을 재원으로 기정예산 1조 1,497억 1,495만원에서 94억 8,885만원이 증액된 1조 1,592억 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96억 9,448만원과 일반회계부담수입 3,8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2억 4,426만원 감액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23억 3,008만원, 시설사업비로 4개교의 다목적교실비 41억 6,000만원, 2개교의 기숙사 신축비 18억 7,600만원, 용암초등학교 급식시설 확충 3억 5,270만원, 임해수련원 직원 숙소 확충 6억 1,000만원, 청주맹학교 교실 증축 1억 5,360만원, 다목적 멀티비전 설치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사업 추진과 현장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교기업 지원 1억 4,000만원, 현대화 실험실 설치 4억 3,000만원,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 3억 3,250만원, 교육정보화 우수교육청 직원 국외연수 2,500만원, 청주시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지원 2억원, 충북평생교육정보센터 홍보관 설치 1,000만원, 200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원 3억 8,071만원, 전국 체육대회 연출 참가자 의상 지원 4,9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5억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 목적대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참 조 :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첨 4)

(끝에 실음)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책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책 2)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 3)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고규강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 중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협의를 통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15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3회-제1차 본회의]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4년도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즉시 예산·결산소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이상일 위원님과 김남훈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이승업, 중등교육과장 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총무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2)
- ▶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별첨 3)
- ▶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첨 4)

※ 별 책 부 록

- ▶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책 1)
- ▶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시행별실명서(별책 2)
- ▶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 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12월 4일 (토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3.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의장 고규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바 있고, 12월 2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개정 및 취득사유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확인하

[제173회-제2차 본회의]

신 바 있어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3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2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바,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497억 1,495만 1,000원에서 94억 8,885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1,592억 380만 4,000원으로 기

정예산액 대비 0.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96억 9,448만 7,000원과 일반회계부담수입 3,86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억 4,42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관별 재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은 학교교육에 38억 3,186만 6,000원, 문화 및 평생교육에 2억 1,000만원, 교육행정에 9억 3,837만 8,000원, 기타경비에 45억 86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관별 내역과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부담수입,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따른 인건비, 다목적교실, 기숙사 신축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 현대화 실험실 설치,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 등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급학교의 방치된 휴면계좌와 잡익계좌를 정리하여 열악한 교육재정에 충당하고자 노력한 점을 감사드립니다.

다만, 교육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시기, 시설사업의 설치, 현장 및 제반 주변환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시설사업이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보조금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을 예산 승인 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사전 협의 등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확보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함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돌아감)

▶ 참 조 :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

[제173회-제2차 본회의]

사보고서(별첨 5)

(끝에 실음)

● 의장 고규강

이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폐회)

○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이승업, 중등교육과장 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총무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별첨 5)

제1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4. 12. .

의 장 고 규 강 

위 원 이 상 일 

위 원 김 남 훈 

의사국장 이 상 기 

(별첨 1)

議 事 日 程 (案)

第173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4. 12. 1. ~ 12. 4.(4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2월 1일(수)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1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4. 12. 1. ~ 12. 4.(4일간)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200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활동 • 예산·결산소위원회	제안설명 “ “
12월 2일(목) 12월 3일(금)	<input type="checkbox"/> 의안관련 현장방문 <input type="checkbox"/> 예산·결산소위원회	본회의 휴 회
12월 4일(토) (11:00)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200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177-1 호
의결 연월일	2004년 12월 일 (제 177 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4년 11월 27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3-1
----------	-------

제출년월일 : 200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이유

2005학년도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 신설과 학생수 감소로 병설유치원, 초등학교분교장 폐지에 따라 독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05학년도 병설유치원 3개원 및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분교장 1개교, 분교병설유치원 1개원 폐지 (안 별표 3 및 별표 4, 별표 6)

□ 개정조례안 : 붙 임

□ 조례개정 변경 내용

○ 학교신설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치원명	위 치	개원년월일	설 립 사 유
사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1번지	2005. 3. 1	공교육화 기반 조성
죽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293번지	2005. 3. 1	공교육화 기반 조성
내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132번지	2005. 3. 1	공교육화 기반 조성

- 초등학교

명 칭	위 치	개교 년월일	신 설 사유
사천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1번지	2005. 3. 1	덕성초등학교 분리
죽림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293번지	2005. 3. 1	가경4지구 택지개발지구

- 중학교

명 칭	위 치	개교 년월일	신 설 사유
금천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26번지	2005. 3. 1	용암2지구 택지개발지구

○ 학교 폐지

- 병설유치원 폐지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장연초등학교 광진분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14-1번지	2005. 3. 1	원아수 감소 및 장연초 광진분교장 폐지

- 초등학교 분교장 폐지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장연초등학교 광진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14-1번지	2005. 3. 1	학생수 감소

□ 참고사항

- 신·구 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청주동중학교란 다음에 금천중학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금천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26번지
-------	------------------------

별표 4의 새터초등학교란 다음에 사천초등학교란을, 개신초등학교란 다음에 죽림초등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장연초등학교광진분교장을 삭제한다.

사천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1번지
죽림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293번지

별표 6의 새터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사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개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죽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신백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내토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장연초등학교광진분교장 병설유치원을 삭제한다.

사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1번지
죽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293번지
내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132번지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표 3 】

중 학 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청주동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475번지
<신	살>	금천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26번지

※ 대비표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명시함.

【 별표 4 】

초 등 학 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새터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00번지
<신	살>	사천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1번지
개신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37번지
<신	살>	죽림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293번지
장연초등학교 광진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14-1번지	<삭	제>

※ 대비표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명시함.

【 별표 6 】

유 치 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새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00번지
<신	설>	사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1번지
개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37번지
<신	설>	죽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298번지
신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212-7
<신	설>	내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132번지
장연초등학교 광진분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14-1번지	<삭	제>

※ 대비표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명시함.

관계법령 발췌서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교육기관의 설치) ①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별첨 3)

의안번호	제 173-2 호
의 결 연 월 일	2004년 12월 일 (제 173 회)

2004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 출 연 월 일	2004년 11월 23일

2004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73-2
----------	-------

제출연월일 : 200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사유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취 득

(단위 : m², 천원)

구 분	기 관 명	사 업 명	수 량	추정금액
건 물	상당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1,420	1,022,900
	제천디지털전자고	다목적교실 신축	1,176	1,011,300
	남일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978	842,300
	예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1,074	956,000
	학생종합수련원	관사 구입	8동	600,000
합 계				4,432,500

3. 제안근거

- 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2004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 득	계	토지								
		건물			5	4,648/8동	4,432,500	5	-	4,432,500
		기타								
	1. 매입	토지								
		건물			1	8동	600,000	1	8동	600,000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4	4,648	3,832,500	4	-	3,832,500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건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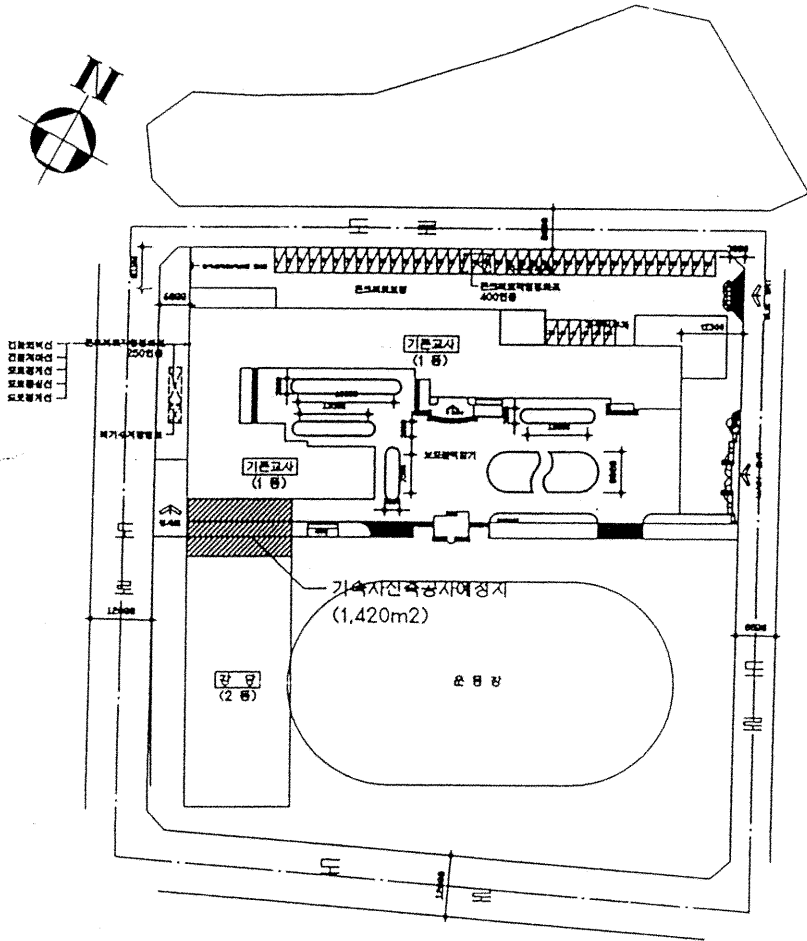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 금 정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 득 소 유 자	비 고
	기 관 명	구 분	소 재 지 번	수 량					
1	상당고등학교	건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33	1,420	1,022,900	하반기	교육환경개선	교육감	도면1쪽
2	제천디지털전자고	건물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360	1,176	1,011,300	하반기	교육환경개선	교육감	도면2쪽
3	남일초등학교	건물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321	978	842,300	하반기	교육환경개선	교육감	도면3쪽
4	예성초등학교	건물	충주시 교현2동 383-1	1,074	956,000	하반기	교육환경개선	교육감	도면4쪽
5	학생종합수련원	건물	미정	8동	600,000	하반기	교직원복지증진	교육감	
합 계					4,432,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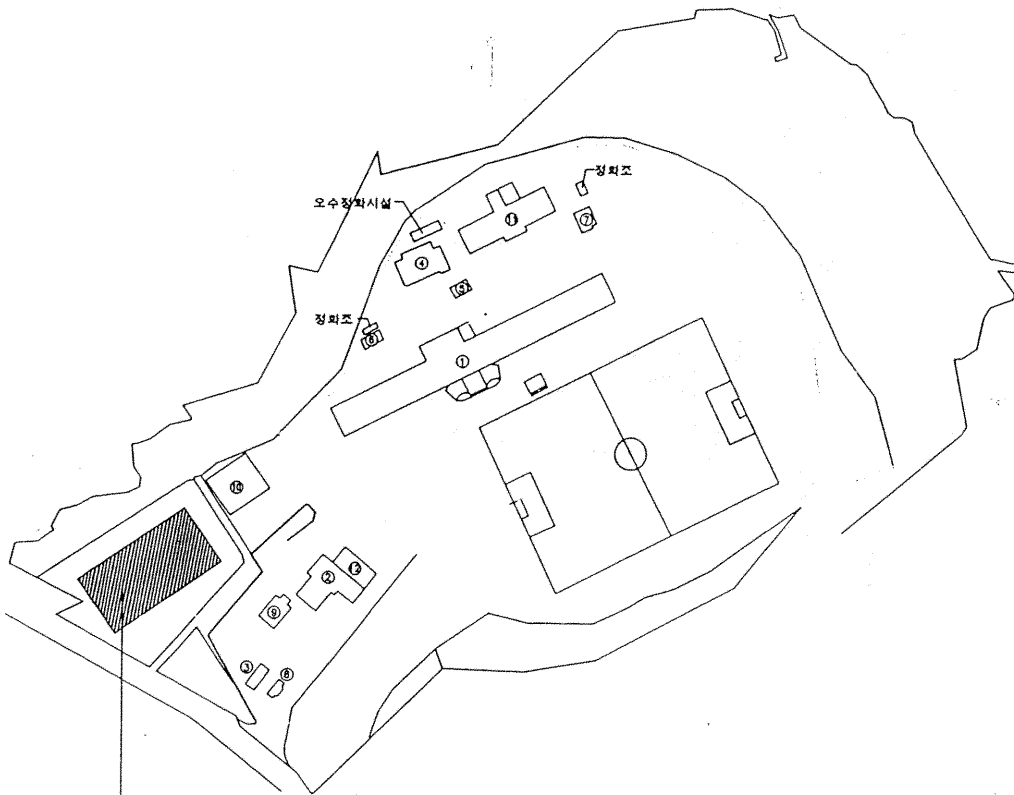
(1) 상당고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m ²)	사업금액 (천원)	사유
기숙사신축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33	철콘슬	1,420	1,022,900	○ 교육환경개선



(2)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사업금액 (천원)	사유
다목적교실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360	철콘슬	1,176	1,011,300	○ 교육환경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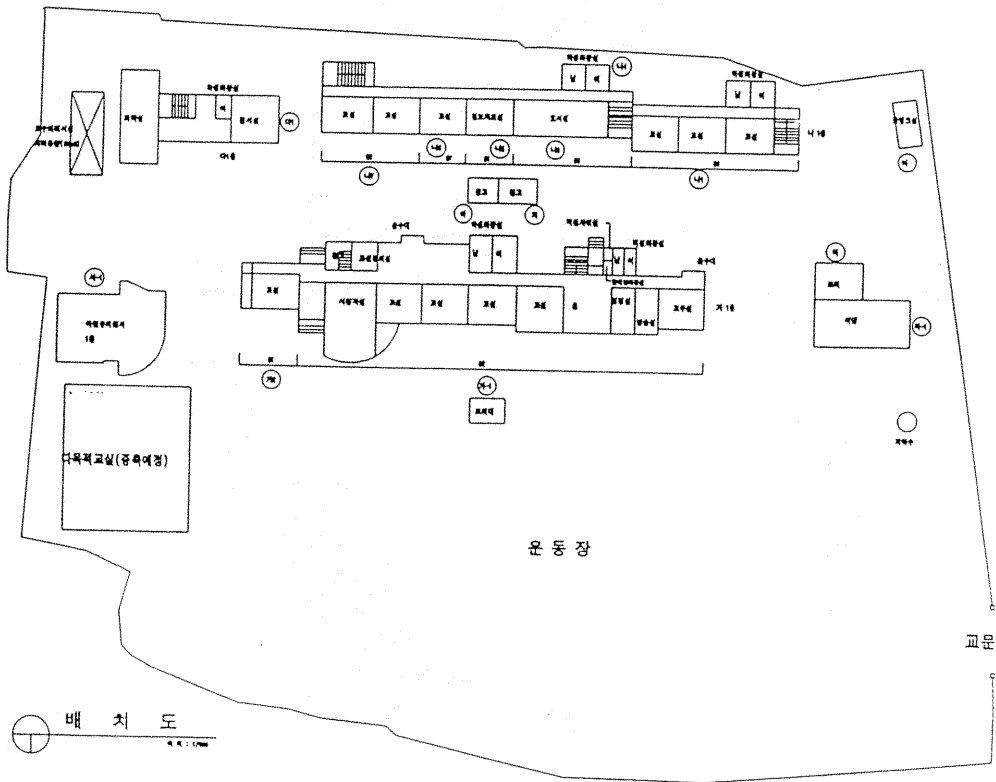


다목적교실신축예정
(48m*24.5m=1,176㎡)

(3) 남일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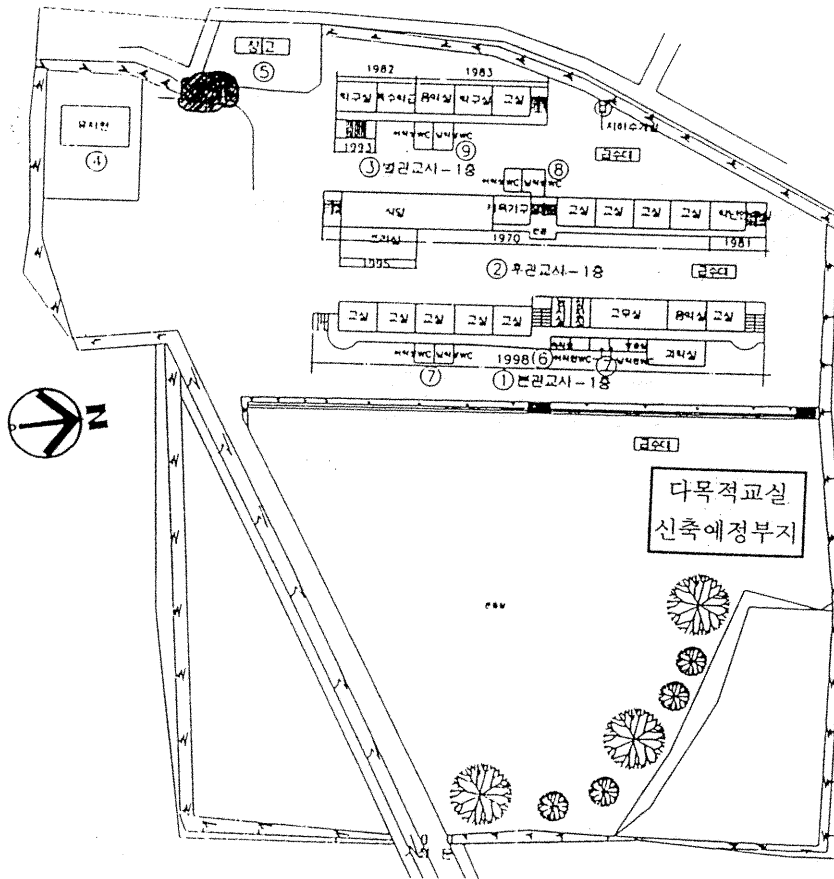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 량 (m ²)	사업금액 (천원)	사 유
다목적교실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321	철콘슬	978	842,300	○ 교육환경개선

▣ 남일초등학교



(4) 예성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m ²)	사업금액 (천원)	사유
다목적교실	충주시 교현2동	383-1	철콘슬	1,074	956,000	○ 교육환경개선



(별첨 4)

의안번호	제 193-3 호
의결 연월일	2004년 12월 일 (제 193 회)

200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4년 11월 23일

200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173-3
----------	-------

제출연월일 : 2004. 11.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기 획 관 리 과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조 1,497억 1,495만 1천원에서
세입·세출 예산 각각 94억 8,885만 3천원이 증액된 1조 1,592억 380만
4천원으로 편성
-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96억 9,448만 7천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3,862만 6천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2억 4,426만원 계상
-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38억 3,186만 6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2억 1,000만원
교육행정 9억 3,837만 8천원, 기타경비 45억 860만 9천원 계상

예산(안) : 별책

사항별설명서 : 별책

(별첨 5)

심 사 보 고 서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4. 12.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11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4년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소위원회(2004년 12월 1일)

○ 제2차 소위원회(2004년 12월 3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 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49,714,951천원에서 세입·세출예산 각각 9,488,853천원 이 증액된 1,159,203,804천원으로 편성한 바,
-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 9,694,487천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 38,626천원 을 증액하고,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244,260천원을 감액하여,
- 세출예산에 학교교육 3,831,866천원, 문화및평생교육 210,000천원, 교육행정 938,378천 원, 기타경비 4,508,609천원을 계상하였음.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 있게 검토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예산편성 개요

예산규모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1,149,714,951천원보다 9,488,853천원이 증가한 1,159,203,804천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 고
		금 액	비 율	
1,159,203,804	1,149,714,951	9,488,853	0.8% 증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9,694,487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38,626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244,260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재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 관 별	금 액	구성비(%)	
국가부담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116,682	117.2
	국고지원금	△1,422,195	△15.0
	소 계	9,694,487	102.2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법정전입금	0	0.0
	비법정전입금	38,626	0.4
	소 계	38,626	0.4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재산수입	738,029	7.8
	사용료및수수료수입	90,676	0.9
	잡수입	△1,072,965	△11.3
	소 계	△244,260	△2.6
주민(기관 등)부담수입및기타	기타지원금	0	0.0
합 계	9,488,853	100.0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3,831,866천원, 문화및평생교육 210,000천원, 교육행정 938,378천원, 기타경비 4,508,609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	관	별	금	액	구성비(%)			
학교교육	유	치	원	△350,817	△3.7			
	초	등	학	교	3,267,038	34.4		
	중	학	교	△1,451,475	△15.3			
	고	등	학	교	1,460,127	15.4		
	특	수	학	교	906,993	9.6		
	기	타	학	교	0	0.0		
	소	계		3,831,866	40.4			
문화및평생교육	평	생	교	육	210,000	2.2		
	소	계		210,000	2.2			
교육행정	교	육	청	668,378	7.0			
	지	역	교	육	청	0	0.0	
	교	육	지	원	기	관	270,000	2.9
	소	계		938,378	9.9			
기타경비	지	방	채	상	환	0	0.0	
	제	지	출	금	0	0.0		
	예	비	비	4,508,609	47.5			
	소	계		4,508,609	47.5			
합	계		9,488,853	100.0				

□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 비정규직 인건비 2,330,084천원
- 다목적교실 및 기숙사 신축 6,036,000천원
 - 다목적교실(초2, 고2) 4,160,000천원
 - 기숙사(고1, 특수1) 1,876,000천원
- 기타시설 1,391,300천원
 - 학교급식시설(초1) 352,700천원
 - 임해수련원 직원숙소 확충 610,000천원
 - 교실증축(특수1) 153,600천원
 - 다목적 멀티비전 설치 275,000천원
- 교육활동지원 927,500천원

· 학교기업 지원(1교)	140,000천원
· 현대화실험실 설치(21교)	430,000천원
·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	332,500천원
· 교육정보화우수교육청 직원 국외연수(5명)	25,000천원
○ 평생교육 지원	210,000천원
· 평생학습도시 지원(청주시)	200,000천원
· 충북평생교육정보센터 홍보관 설치	10,000천원
○ 기타사업	430,270천원
· 대학수학능력시험	380,710천원
· 전국체육대회 연출 참가자 의상지원	49,560천원

나. 종합의견

금번 200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부담수입,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다목적교실, 기숙사 신축 등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과 현대화실험실 설치,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 등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어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급학교의 방치된 휴면계좌와 잡익계좌를 정리하여 열악한 교육재정에 충당하고자 노력한 점, 감사드립니다.

다만, 교육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시기, 시설사업 설치현장 및 제반 주변환경요인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시설사업이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보조금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을 예산 승인 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사전 협의 등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확보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4. 12. 4.

예산·결산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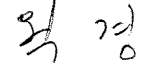
위원장

이기수



간사

진옥경



위원

김남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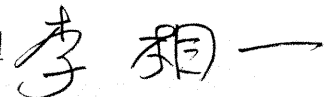
성영용



송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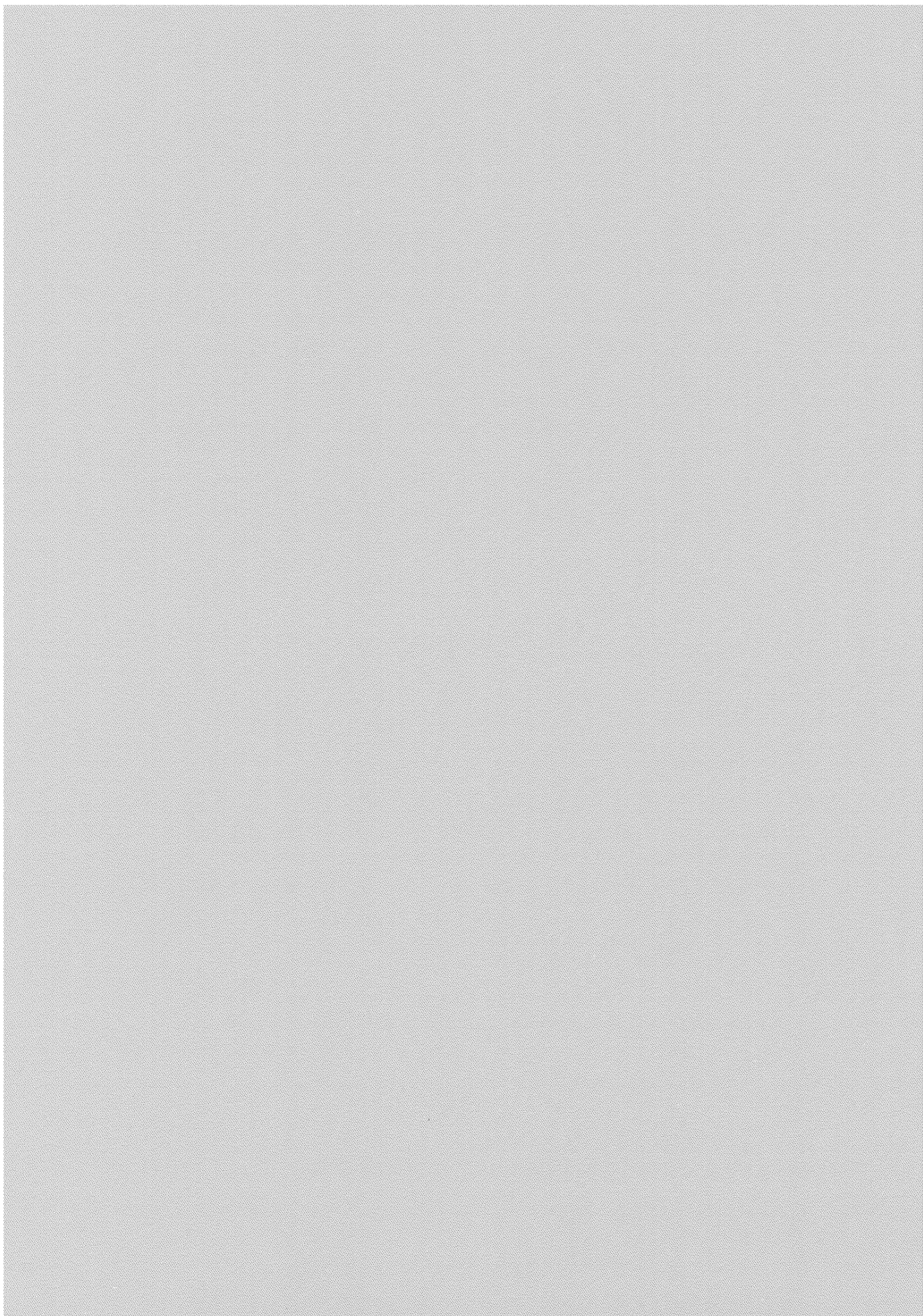
이상일



第17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47
II. 제1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51
III. 부 록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119
2. 서면답변서	121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12월 1일 (수요일) 11시 22분

議事日程 (제17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22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이기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습니까?

이기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무 말씀이 없는 걸로 봐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추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른 뭐.....

● 이기수 위원

나는 다음번에 했으면 하는.....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다른 위원 추천이 있다면 복수가 됐으면 조율하지만 단수 추천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받아주시죠.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수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기수

추가경정예산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기수입니다. 열심히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선출의견

(11시 25분)

●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헌 위원

진옥경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기수

진옥경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진옥경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간사 진옥경

뜻깊은 소위원회 활동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장님 잘 받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1시 26분)

●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
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늘과 12월 3일
2일간으로 하여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

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
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3일 10시 30분 제2차 소위원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기수, 간사 진옥경,

위 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상일.

○ 출석공무원 : 3명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 부 록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12월 3일 (금요일) 10시 38분

議事日程 (제17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38분 개회)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작성하신 기획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

▶ 참 조 : 200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 본회의(별책 3)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 좌석 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담당관, 과장이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남훈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양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께서 제3회 추경안 작성에 수고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규모가 적으니만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본청에 각과에 전부 해당되는 문제라 이것을 일괄답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님께서 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각과별로 중등교육과 사서보조원 인건비, 과학실업교육과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교육정보화과 전산보조원 인건비, 평생교육체육과 조리사 인건비,

조리보조원 인건비, 영양사 인건비 그 다음에 행정업무보조원 인건비, 기획관리과 교원사무보조원 인건비,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이렇게 해서 보조원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보조원 인건비는 증액이 된 반면에 지역교육청에 이러한 인건비 증액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그 인건비 책정이 비정규직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지역교육청에는 비정규직 인건비 발생요인이 하나도 없는 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비정규직이 하나도 없어서 계상이 안된 건지 이제까지는 얼마의 인건비를 매월 지급했는데 인상된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중앙정부에서 비정규직 사실은 임시직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서 지난 7월부터 인상해 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교부금이 사실 늦게 왔습니다. 도내에 지금 우선 인원수를 말씀드리면 약 한 3,690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이 인원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그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인당 지원액은 직종에 따라 틀립니다. 지금 현재 요번에 계상된 것이 영양사, 사서, 학교회계직원, 교무보조원, 과학보조원, 행정업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조리사, 조리보조원 해서 9개 직종인데 9개 직종에 2,884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종별로 인상액을 보면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상 전에는 단가가 하루에 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만 6,000원으로 인상되고 사서직 같은 경우에는 2만 8,000원에서 3만 6,000원, 학교회계직원은 2만 8,000원에서 3만 2,000원 직종에 따라 틀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있는 직원들이 그 지역교육청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본청 예산에 일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인원수가 수시로 나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교육청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본청 각과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재배정하는 방식을 하려고 본청 각과에 넣었습니다.

● 김남훈 위원

비정규인원이 3,600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충청북도내

●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근데 여기 보면 3,600명이 안되는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안용균

전체 총 인원이 3,696명인데 요번에 계상인원이 2,884명입니다. 그 나머지 인원은 처우개선 제외대상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교육부 기준보다 현재 저희가 임금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제외해 놓고 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제외해 놓고 또 그 외에 유치원 종일반이라든가 특수교육보조라 해서 약 360명이 교육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직종이 있습니다. 요런 인원 한 812명을 제외한 것이 요번 2,884명분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 김남훈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인당 추가인상요인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제까지는 얼마를 지급했는데 앞으로 추가발생요인이 얼마나 이거예요. 그러면 총 급여액이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안용균

우선 학교에서 부담하는 지원액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저희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의 조리사나 조리보조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부담을 합니

다.

● 김남훈 위원

그게 총괄해서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 예요?

● 총무과장 안용균

전체 금년같은 경우에 전에 도내에 한 3,600명중에서 총 예산소요액이 603억입니다. 603억에서 요번에 지난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가소요액 23억이 이번 요번 추경에 인상되는 겁니다.

● 김남훈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과학실업교육과 소관같은데 지금 지역교육청예산을 보면 지역교육청의 현대화실험실설치비가 지역교육청에 1교 내지는 2,3교씩 이렇게 2,000만원씩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교당 2,000만원씩 배당이 되어 있는데 이 현대화실험실설치 선정기준 그리고 이제까지 몇 학교가 현대화설치가 되어 있으며 몇 학교가 아직 되어 있지 않는가 이것을 전부 완성하려면 몇 년도에 가서 이것이 사업이 다 끝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화실험실 설치대상교는 추경예산에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7개교 해서 21

개교를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학교가 150개 학교정도 됩니다.

지역교육청별로 균일하게 분배하다 보니까 요번에는 전체 풀을 내봤습니다. 풀을 내서 35%가 안되는 시·군을 35%에다 맞추다 보니까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해서 5개 시·군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공히 35%가 지금 현대화가 되었고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 해서 100% 현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남훈 위원

시내에 있는 큰 학교나 또 아니면 지역에 있는 소규모학교 이런데도 공히 똑같이 2,000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000만원의 성격 그러니까 현대화시설에 대한 것이 어떤 제한된 장비만 해 주기 때문에 2,000만원 들어가는 것인지 학교규모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당초는 4,000만원 지원금하고 2,000만원 지원금하고 두 개로 구분해서 지원했었는데 4,000만원짜리는 바닥하고 천정을 보수하면 추가 2,000만원이 들어가고 내부에 있는 시설기자재를 저희가 품목별로 전부 다 산출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학교별로 다 표준단가하고 표준시설 기준을 해 가지고서 크거나 적거나 거의

다 균일하게 다 시설기준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남훈 위원

알았습니다.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추경자료를 갖다가 기획관리과장님이 받으시죠. 맞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맞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런데 이 추경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보은군이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추경자료에 빠졌던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보은군에는 추경예산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건지 빠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최종 추경이라 특별교부금 또 부득이한 조정사업만 넣었기 때문에 보은군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추경사업이나 기타예산을 갖다가 편성하실 적에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사업을 받아 가지고서 여기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다른 교육청은 조정사유가 있어 가지고 조정했는데 보은군은 조정사유가 없어 가

지고 추경예산 요구가 없었습니다. 보은에서는

● 김남훈 위원

보은에서는 추경예산 요구가 없다 제가 알아본 것하고는 틀리네, 지역교육청에서 추경사업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여기서 재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여기서 그 돈을 예산을 갖다가 얼마 얼마 배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경사업을 올려라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자금 배정할 때 그 사업에 해당되는 군을 우리가 배정을 해서 요구를 받습니다. 근데 보은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 김남훈 위원

아니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그 사업의 효과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장의 말을 들어서 편성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일괄적으로 무슨 무슨 내용을 해 가지고서 추경사업을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각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요구를 요번엔 안받고 사립학교인건비 있는 해당되는 군 거기에만 조정하고, 또 일부 특별교부금이 해당되는 시·군 여기에는 요번에 추경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보은은

그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빠진 겁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이번 추경사업내용을 미리 다 정해 놓고서 그 사업에 해당 없는 시·군은 뺐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이 타당한 겁니까? 국장님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타당합니다. 사실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해당 교육청이라든지 이런데서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할 것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원체 소규모고 특별한 것에 한정되다 보니까 특정목적에 한해서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통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지역의 현안사업은 누구보다도 지역교육청에서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배분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역의 현안 문제점을 들어보고서 거

기에다가 예산배정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았습니다.

다음에는 본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사업인데 서해임해수련원 숙소를 당초에는 부지를 사서 여기에서 관사형식으로 신축을 해서 직원숙소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구입이 여의치 못해서 아파트로다가 매입을 해서 직원숙소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아파트에 산 보면은 7,500만원씩 서 있는데요, 예산이 근데 이 7,500만원이라는 것이 1개 아파트의 8동을 전부 다 매입을 하는 건지 또 산재해서 있는 건지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괄 이렇게 한 동을 해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는 아마 산재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 입주를 하려는 직원들도 개인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거 등등을 이유로 해서 한 군데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것보다는 한 몇 군데로 이렇게 산재해 있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기왕에 직원숙소를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직원들 요구가 일정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면 흐트러져 있다면 아파트 가격이 똑같이 7,500이 나오나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이게 지금 평균을 정한 것입니다.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일정한 중개상에 연락을 해보니까 대충 그 정도면 살 수 있다

● 김남훈 위원

몇 평짜리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22평짜리입니다.

22평짜리 같으면 직원들이 2명씩 방이 2개입니다. 2명씩 들어가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8가구를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할래도 어렵습니다. 그게 구입을 하기가 이거는 구입하는 조건도 그렇고 또 사용하려고 하는 직원들도 이렇게 산재해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산재해 있는 걸 저희들도 업무연락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해서 는 필요합니다마는 일단은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남훈 위원

아파트단가 매입비가 상당히 비싸네요. 22평에 그 지역에서 7,500이라는 것은 대단히 청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비싸다고 볼 수가 있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실질적으로 거기 아파트를 저희들이 사지 않고 땅을 구입을 해서 16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원룸을 지으려고 계산을 하니까 한 12억정도 나옵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 김남훈 위원

이 8동이면 직원을 전부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5분이 계시기, 16분이.....

● 김남훈 위원

15분 중에 만약에 살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아파트 한 동은 쥐야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거기서 안되잖아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지금 현재 여기 충북에 계신 분들이고 또 대개 1,2년 사이에 이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살림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살림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이주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가서 살림하고 그럴 적에는 이사

비용도 주고 하는 그런 별도의 대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김남훈 위원

이사를 간다면 이사비용 주면 되지 문제될 것 없잖아요. 안가서 걱정이지 살림을 안해서 걱정이지 이사비용 같은 거야 옹당히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여하튼 기왕 이런 아파트 같은 것을 갖다가 구입해서 직원숙소로 사용할 것이라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숙소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은 첫째는 근무여건이 좋아야지만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사기가 진작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왕하는 것 너무 협소하다든지 그 몇 푼 아끼려고 해 가지고서 불편을 주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리고 어제 저를 비롯해서 세 명의 교육위원님들이 상당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부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굉장히 있다고 저희들은 아주 공통된 의견을 갖다 제시했습니다.

첫째, 이 기숙사를 갖다가 지으려고 하는 부지를 담당직원이 가서 보시고서 예산을 수립하신 것인지 또는 그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출 됐어요.

여기 보면은 기숙사설계비를 갖다 10억 2,290만원을 갖다가 책정해 놓으셨는데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이왕 짓는 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급식소가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지하실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여름에 급식종사원이 줄도까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에 기숙사를 지으면서 급식소까지도 포함해서 신축을 해 주십시요 하고서 부탁을 드렸는데, 기숙사부분은 평생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또 기숙사관계는 다른데 해 가지고서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조율이 안되어 가지고서 이번엔 급식소부분은 빠지고 기숙사부분만 이번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 기숙사비도 명시이월 쪽으로 아주 미리 딱 결정해 놓으시고 예산에 올리셨네. 그렇죠.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맞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 상당고등학교 한번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했었는데 어제 위원님들 갖다 오시고 나서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처음 당초에 아마 교장선생님이 그쪽을 요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그거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교실 정면에다가 해서 가린다고 그러면 채광문제 또는 교실의 어둡고 그러면 또 다른 학생들로부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염려가 되고 기존에 있는 거기가 보니까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그러면 강당부분을 일부를 좀 손을 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추후 이렇게 검토를 해서 위치가 잘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처음에 기숙사를 하게 된 것은 교장선생님들이나 그 동문들이 다 원해 가지고 했던 것이고, 나중에 또 위원님들 가지고 나니까 교장선생님께서 급식소문제도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니까 욕심이 나니까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당초 명시이월로 한 것은 어차피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금년도에 집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명시이월로다가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래서 거기 가보면 강당에 붙어 있는 화장실 면적이 대단히 넓어요. 그것을 갖다가 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철거를 하려면 무슨 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가 거기에서 허락을 받아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철거비만도 만만치 않을 거고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철거 부분이 지은지가 얼마 안돼서 굉장히 아까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도 예산 10억 2,290만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명시이월을 시켰을 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 의사국에다가 한번 알아 놓아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중에서 40억 얼마가 국고라고 하셨죠.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4억 5,700

● 김남훈 위원

4억 5,700 나머지는 지방비예요?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맞습니다, 지방비.

● 김남훈 위원

그러면 국고를 명시이월 시켜도 괜찮습

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관계없습니다.

● 김남훈 위원

만약에 이것을 사업을 갖다가 보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보류하면 다시 사고이월이 가능하니까 내년에 가서..... 아니 안쓰면 반납해야죠. 그렇지만 식당을 지을 경우에는 내년에 가서 종합검토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 김남훈 위원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 생각에는 지금 급식소가 결부가 되고 기숙사하고 같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에 1차 추경에서 급식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갖다가 그쪽으로 넘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고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사업을 보류시키고 넘어갈 적에는 국고를 반납해야 된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맞습니다.

● 김남훈 위원

명시이월 1년도 안된다 이거예요?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 위원장 이기수

아니 다른 분이 답변하실 경우는 회의록 기록 때문에 반드시 소속과 성명을 얘기하고서 말씀해 주세요.

● 김남훈 위원

국장님 종합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에서 반 뎀고 또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반을 뎀 사항입니다. 만약에 보류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당초에 기숙사가 필요했던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위치는 선정이라든지 또 급식소가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급식소와 병행하는 문제요런 점을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부분을 종합해서 검토를 하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왕에 하기로 했던 사업이고 하시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다음연도에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게 잘 선정이 되어서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다시 한번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보류했을 경우에는 국고에서 지원받은 예산부분은 반납해야 된다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 김남훈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예산안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하나 확인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각 학교에 공통으로 도시계획확인원을 정확히 확인이 됐는지 그거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는데 아마 해당 교육청에서 확인해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성영용 위원

추정하시는 것보다 앞으로 확인을 해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디지털고등학교 갔을 경우에 부지를 하는데 학교의 부지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지선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뭐냐하면 넓은 터에서 옛날에 건물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도시계획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아서 그때 띄어다 갖다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업무에 차질이 나고, 나중에 또 부지를 확정했다가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몇 년 전에 아마 학교부지인 줄 알고 했는데 부지만 공원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공사를 못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꼭 좀 도시계획 확인원을 꼭 확인해서 학교에서 준비하던지 아니면 시설과에서 확인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학교 향후 건물취득배치도 관계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운동장이 굉장히 좁아요. 이 배치도 보게 되면은 이 축적도라든가 이것을 제대로 나타내서 거기에 표시를 해

주시면 도면만 보고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학생이 천여명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상태의 배치라고 그러면 학생들 늘 운동장이 굉장히 많이 좁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서류 작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저번에 얘기는 드렸는데 저한테만 그냥 얘기하고 아직까지 다른 분한테 얘기를 안한 것 같은데, 주요설명자료 27쪽에 검정수수료 중 산출내역을 보시게 되면 산출내역이 1,810만원이고 실 금액은 1,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는데 여기 정정을 하던지 회의 전에 정정을 하던지 아니면 어떤 설명을 확실하게 하라고 얘기를 어제 그저께 제가 미리 얘기를 드렸는데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얘기해도 안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들고서 바로 얘기는 했는데 정정을 못했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리고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수수료는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이 아닌가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산출했었는데요. 그래서 2,700명을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마감결과 1,844명이 와서 한 800명이상이 결원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한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설명자료 28쪽에 위약금이 3,162만 8,000원이 증가했는데 주된 내용이 무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각종 공사나 설계용역, 물품납품에 있어서의 지체상금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지체상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공사감독이나 계약업무에 충실을 기해야 되는데 요런걸 줄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어서 향후 이러한 위약금 내지 변상금이 적게 하도록 행정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위약금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학습활동에 상당히 지장이 될까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위약금이 가 능하면 발생되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고 물품구입이나 여러 가지.....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리고 예금이자수입이 20억 9,554만 6,000원이 줄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국고지원금이 제때 지원이 안됐나 아니면 약속된 금리일텐데 예상을 전혀 못했다는 부분인가 아니면 학교예금 잔액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잔액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나 한번 알고 싶습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약 20억원에 가까운 예금이자를 이번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계속되는 금리하락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3.1 내지 3.3%였습시다라는 계속적으로 연중 하락되어서 현재의 금리는 2.85%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액이 불가피하고, 두 번째 사유는 저희들이 보유자금이 감소했다는 그 이유입니다.

요것은 그 이유는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해서 교육부로부터 오는 교부금의 송금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예로 보면 우리가 받아야할 금액의 92%를 현재

쯤에서 받았는데 현재로는 8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적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도에 대비해서 2002년도에 대비해서 356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할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예상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다소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한 45억 정도 이렇게 예산편성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보유자금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학교회계 자체수입으로 되고 저희들한테 송금이 되지 않습니다.

● 성영용 위원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잔액을 총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아직 안되어 있는 거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지난번에 질의해 주시고 안을 제시하신 이후에 내년도의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하나의 혁신과제로 선정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자료전산화 하는 것으로 지금 업무를 구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입계에서 물론 여기 예산에 관계는 없는 부분이지만 휴면자금을 정리 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고무할 일이고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의 휴면자금을 파악한 금액이 얼마나 되나 한번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답은 안해 주셔도 괜찮습니다만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성영용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39쪽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원어민교사를 29명을 확보하기로 했다가 22명밖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로 인해서 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또한 이런 부분이 보수가 적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만일 보수가 적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그런 계획이 없는지 한번 답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29명에서 22명으로 줄어 들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충북지역의 근무여건이 다른 광역시라고 그럴까 이런 지역에 비해서 열악하다, 꼭 충북에 오더라도 청주나 충주, 제천에만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읍·면지역에까지 읍소재지까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근무여건에서 본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는 그런 원인이라고 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29명을 계획을 했던 것은 영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영어과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켜서 학습효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마는 현재 22명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년도 인원보다는 늘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기대했던 것만큼은 인원이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 인원보다 상위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활용해 가지고 더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했었는데 미치지 못해서 원어민들이 지난해보다 활용하는 학교가 참여해서 지도하는 학교수가 더 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수와 관련되어서 계약을 포기하는 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부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건비가 200만원을 조금 넘고 있는데, 그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적게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텐데 현재는 그 액수는 저희가 더 이상 올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더 올려준다고 하면 타 시도와의 형평성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부를 통해서 고용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그대로 활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가되는 인원 예를 들면 잉글리시캠프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다른 연수원에서 활용하는 인원이 교육부에서 배정하는 인원가지고 부족할 때에는 인건비를 더 늘려서라도 우리충북에 와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 성영웅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이 말씀 하나드리겠습니다.

제천에 사립인 대제중학교의 운영관계를 말씀드리면은 몇 년 전부터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학년별로 1명씩 지금 원어민교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상당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 예로 다가 발표는 아직 나지 않았지만 제천고

등학교 이후장학생 충북도내 최고득점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애가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제중학교 때 원어민 교사의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중학교 출신들이 영어에 대한 것은 아주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어느 날 체육관개관식에도 갔을 때 1학년 학생이 영어로다 인사를 하고 와서 반갑다고 그렇게 할 정도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있는데, 우리도 사립에서 이렇게 하는데 공립에서는 왜 관리상에 문제가 있나 또 제가 이 대제중학교의 원어민교사에 대한 비용관계를 한번 같이 따져 봤어요. 우리하고 차이가 중식비 하나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1년에 55만원 더 주는 것밖에 없어요. 월 5,6만원정도 더 주는 건데 그것밖에 없으면서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는 조금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원어민 교사 관리상에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설명자료 41쪽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사업에 있어서 각 요원들이 기본봉급을 다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날 수당이 9만원에서 부터 일부 더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급량비 따로 나오고 여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험장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2,780만원으로 각 시험장별로 아마 70만원씩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봉급 다 주고 먹여주고 별도 또 수당주고 예산이 너무 선심성으로 이렇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이 사업을 대학수학능력시험 보는 사업을 우리 종래에는 명칭이 달랐습니다마는 우리 보통교육에서 담당하다 대학으로 갔다 다시 저희 보통교육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을 대학에서 관리를 하던 보통교육에서 관리를 하던 우리선생님들이 중·고등학교활용을 안하고 선생님들 활용을 안한다면 외부에 외주를 해야 되겠죠. 장소를 빌려주거나 이럴 때 그럴 때의 비용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련의 과정으로 봐서도 감독수당이 좀 과하다 또는 공무원으로서 봉급을 받고 있는데 이걸 또 이중으로 혜택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

니다마는, 공정을 기하고 책임감을 부여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드릴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사고없이 잘 마치기를 그리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서, 이중지원이라는 의미는 만약에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한다면 이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봉사라고 그러면 제가 지나친 표현입니다마는 여기 감독하시는 분들 상당히 기분 좋아서 이거 많이 주니까 거기 가서 감독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하루수당 한 10만원정도면 고급인력이 거든요.

● **교육국장 김전원**

선생님들 다 인력으로는 거기 감독해야 될 능력은 아닙니다만 다 고급인력을 갖다가 거기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가시는 선생님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서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설명자료 47쪽하고 48쪽 과학실업교육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공업고등학교 학교기업에 충북테크 푸르메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 중에 사무원 하나, 생산기능인 두 명에 대해서 그 인건비에 모든 보험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 4대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100여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포함되어서 그런 건지, 여기 연관되어서 전부 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생산기능인의 월급여가 1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인 110만원 가지고 와서 일하겠습니까? 요새 또 이 사업이 경쟁력유무를 한번 계산해 보셨는지 경쟁력에 관한 것은 제가 일반기업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다 그 기업을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이 학교기업은 우리학교에서 하는 기업은 일반기업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그러면 경쟁력을 갖추지 않았으면 그냥 해보는 건지 연습 삼아서 큰 돈 들어가면서 말이죠,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적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충북공고 졸업하자마자 채용된 두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고로 지원되면서 회계집행관계는 세무사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업회계가 그래서 저희가 일반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예산집행한 그 결과를 전부 다 세무서에 위탁해 가지고 또 교육부에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4가지 보험은 다 포함된 걸로 생각되고 최저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까지나 학생들에 대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적자운영은 아니지만 다소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창업정신, 기업정신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 추구라는 큰 목표는 다소 달성되지는 못하지만 학생들에게 창업을 함으로 인해서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을 기를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충북공고가 이게 학교기업으로써 선정된 것은 2004년 6월달에 저희가 신청서를 교육부에 냈습니다. 내 가지고 2004년 7월달에 충북공고가 선정이 됐는데 전국에 5개 학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평가단은 교수가 중심이 돼 가지고 교육부에서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심사결과 저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서라든지 모든 운영

면에서 있어서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 **성영용 위원**

답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익추구와 생존이거든요. 그런데 도전정신이나 창업정신을 기른다고 그러면은 돈만 가지고 하면 어떤 창업을 못합니까? 얼마나 지속성 있게 해 주느냐 이걸로 인해서 이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기업정신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물론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는 거지만 운영관계는 해당 과에서 최대한 이익과 품질 면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경**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다음은 교육정보화과 56쪽하고 57쪽입니다.

ICT활용 교육연수 프로그램 선도요원 양성 연수계획이 취소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취소배경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취소했다 하더라도 교실수업도약을 위해서 필수사업이라면, 예산액이 많지도 않는 1,056만원인데 무조건 삭제하지 말고 방학 등을 이용해서 대학에

위탁 또는 자율연수비 지원 등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방안은 강구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교육인적자원부만 바라보고 하는 그런 교육행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교실수업도약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최대 전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안으로 자체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고 이렇게 교육부만 쳐다보는 것은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 많은 돈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생님들을 3년 주기로 한 해에 33%이상의 선생님 금년만 해도 5,400명을 유사 이런 ICT활용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에서 선도요원이라 그러 가지고 4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강사노릇을 하도록 이렇게 4년째 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명은 또 그분들을 포함한 각 지역별로 초·중등 교과별로 20명을 연수시키는 내용인데, 4년동안 지속해 오다가 금년에 그 연수가 멈췄고 지금 성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교실수업도약을 위해서 이 분들 그 정도가 아니라 한 5,400명의 선생님들의 연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극소수의 교육부의 그런 정책적으로 하던 것이 연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감액한 요런 내용이지 절대 저희들이 소수의 인원을 안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같은 교육정보화과 소관인데 주요설명자료 60에서 62쪽 교육청직원 국외연수 관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서류를 우리 예산서하고 같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립전 사용보고서를 미리 주게 되면 큰 차질이 없는데 설명자료만 보게 되니까 11월 4일부터 벌써 기집행한 부분, 성립전 사용했다는 표시가 하나도 없거든요. 책자에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성립전 사용내역을 예산서 주실 때 같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말씀하신 게 아주 옳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성립전 예산을 이렇게 한 것이 나타나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리 말씀드리고 해야하는 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성립전 사용한 거는 다목적멀티비전 설치해서 63쪽 거기에만 나타나 있어요. 설명자료에는 그 앞에는 나타나지 있지 않아요.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67쪽 맨 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설명자료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 가지고 시시비비 따질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목적멀티비전 설치는 어디다 했죠.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아직 장소를 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일단 설계에 들어간 요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다 하실 건지?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지금 4곳을 선정해서 검토 중입니다.

● **성영용 위원**

좋은 자리로 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알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다음은 85에서 86쪽 학교운영지원과 소

관인데 40억원의 감액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감액사유가 사립학교 결원교사의 기간제교사 대체 또는 추가결원으로 인한 차액조정이라고 그랬는데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임용율이 한 %나 되는지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먼저 40억이라는 많은 금액을 감액하게 되어서 예산편성을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체 비율까지는 해보지 않았습시다마는 지난해에 평균 기간제교원이 94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94명을 임용을 했는데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의 완성 연도가 2004년도고 2005년도부터 됩니다. 그러면 7차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교과목을 선택할 때 필요한 인원마다 모두 정규교사로 임용할 경우에 나중에 전체 정원 대비 과원교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금년도까지는 기간제교원을 많이 임용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의 연간 인건비 차액이 약 2,060만원정도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한 19억원정도의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질의하시지는 않았습시다

마는 또 다른 이유는 당초에 인건비 인상율을 착오가 있어서 실제로는 5%였습시다마는 8.5%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약 16억원정도의 차액이 발생했고, 그 이외에 단위학교에서 일시적인 휴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원운영교원의 경우 또 사무직원의 경우 그로 인해서 약 한 4억원정도의 저기를 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이러한 소요판단을 앞으로 정확히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각성을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물론 해당과에서는 예산관계 그 부분도 있지만은 이 기간제교사들이 이렇게 되면 신분불안으로 해서 아이들 가리키는데 학력저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관계를 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제가 얘기드리면 40억이라고 그러면 인건비로 쳐서 연봉 5,000만원을 해도 80명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이 서류상으로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이해는 하겠습시다마는 이렇게 되면 뭔가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라든지 교사임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돈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예산관계의 예측관계가 조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휴직이라든지 그 외의 요인으로 인해서 줄었다는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예산관계를 하시더라도 학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20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이기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송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헌 위원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2004년도 마지막 추경인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되는 부분이야 내년에 추진하겠지만 얼마 남지를 앓았어요. 조속히 추진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부분은 서둘러서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들께서 애써 주시고, 우선 제 질문에 앞서서 앞에서 했던 두 위원님들의 질의했

던 보충질의를 한 서너가지를 하고서 제가 준비했던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김남훈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상당고 기숙사신축에 대한 문제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남훈 위원님, 이기수 위원님, 진옥경 위원님, 저 이렇게 네 분이 상당고등학교를 갔을 때 본청에서 시설과 한계장이 거기 와 있습니다, 기숙사위치의 자리가 원래 상당고등학교가 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운동장도 좁고 건축물이 많아서 자리가 적당치 않는데, 그 예정지를 보니까 그것도 아까 지적했던 바와 같이 화장실이 있고 출입문이 있고 해서 거기도 과연 기숙사가 들어갈까 하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장소예요. 또 공간이란 곳은 거기 빼놓고 다른 데는 찾아볼 수도 없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제기를 교장선생님이 문제제기를 합디다, 여기에다 기숙사만 달랑 지어놓으면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머리에 저는 지하실 식당도 가보고 해서 좀 다른 생각을 했었는데 별로 좋게 생각안했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확실히 철학이 있구나, 대부분 교장선생님들께서 예산이 서면은 예산이 혹시 잘못 깎일까 해 가지고 그것만 통과되기를 바래서 다른 문제제기를 안하는데, 교장선생님 애

기는 내가 이 학교 있다가 정년을 하고 가더라도 지금 이 남은 요 자리에서 빼놓으면 앞으로 식당은 지어야 되는데 식당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도교육청한테 욕을 먹더라도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밑에 식당이 들어가고 2층, 3층, 4층으로 기숙사가 들어가야지 지금 남은 공간이란 이 공간밖에 없다 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지하에 있는 식당을 가 보고 하니까 이해가 갔어요. 걱정을 듣더라도 소신있게 말하는 교장이 필요하구나 그러고서 다시 한계장한테 만약에 식당이 들어간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니까 이걸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이 현관 및 화장실 철거문제를 심의해야 되고 또한 기술적으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라서 전혀 백지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이 여기에 위치는 대략 여기쯤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시설까지 가지고 있는 복안은 하나도 없고 기숙사를 지어준다는 것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다 내려오니까 기획관리과에서는 그것만 반영을 하고 교장은 아마 평체과장님에게 있다 여쭙보겠습니다만 물어본 모양이에요.

식당이 이렇게 냄새도 나고 좁고 2부제, 3부제도 바꾸고 어차피 거기 환기도

안되고 말이에요. 그렇게 바꾸어야 지을 자리는 거기니까 지어주소 하니까 평체과장님 말씀은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 안되니까 내년에 추경에 하겠다는 답변을 아마 하신 모양 같아요. 추경에 검토를 해 보겠다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아까 김남훈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계해서 철거비라든가 심사라든가 거기 2층에 들어갈 적에 기본적으로 구조가 달라요. 교육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목적은 과연 위치가 타당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겁니다. 예산은 걱정이든가 등등을 보기 위해서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인데 아까 기획관리국장님 한번도 나가 본 바가 없습니다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설과 담당 한계장 덜렁 따라 나와서 지금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또 기획관리과하고 평체과 과장님들은 각자 조율이 안됐어요.

이런 일들은 누가 조율하고 그래도 현장에 나가면 나가는 것 예고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교육위원들을 맞이하고 거기서 설명이라고 하고 문제만 부각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가서 보고해라 이 상태로써는 보류해야지 예산 통과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위원님 들끼리 우리 식사하면서 의견일치를 봤어요. 이렇게 위원님들을 내놓고 현장 설명

을 하고 현장을 지적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고 계획이 안되고 조율도 못하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까막눈처럼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느냐 하면 김남훈 위원님이 질문했을 적에 국고는 반환해야 된다고 할 적에 과연 이걸 보류시켜서 부결시키는 거죠, 보류는. 말은 보류입니다만 내년엔 식당하고 연계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국고로 반환한다면 이게 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상당히 갈등이 오는데 좌우간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책무성 있게 또 책임 하에서 누가 관리국장이 조율해야 되는지 시설과에서 조율하든지 기획관리과에서 조율하든지 어떤 부서의 누가 이걸 조적 통제하고, 또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 나갈 적에 어느 부서에서 누가 나가 가지고 책임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와 가지고 설명하는 것인가 이런 일련의 절차를 보면서 나는 참담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절대 없도록 우리 집행부서에서 우리가 교육위원들이 무슨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도 책임있는 사람들의 설명과 왜 이렇게 됐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최소한도 와 있어서 설명이 되고 해야지 우리가 뭐 대우받자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의 타당성이나 위치선정의 적절성이나 과연 이 문제에 교장이 소신있게 얘기하는,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 다음에 여기밖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이것마저 기속사로 통과시켜버리고 말면은 앞으로 자리가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난 걱정입니다. 도에서 걱정들을까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 행정이 이렇게 그때그때만 모면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솔직히, 그래서 몇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평체과장님께 먼저 여쭙보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상당고등학교의 식당은 가보셨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 지하실까지는 가봤습니다.

● 송대헌 위원

필요성이나 앞으로 내년의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 겁니까? 계획은 거기서 결정자는 아니지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글쎄 지난번에 최고장선생님이 저랑 사적인 말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하나 오류를 범했는데 기속사를 짓고 이런 거는 그 사실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식소만 그때 당시에 최

철환 교장선생님이 기숙사 짓는다는 얘기는 저는 못들었거든요. 이 급식소가 이렇게 어려우니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 저로서도 방법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신년도에 이렇게 봐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기숙사와 연계한 이런 생각은 못했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오류를 범했다 하는 거는 기획관리과에도 얘기를 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급식소가 시급하다고 말씀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요. 교장선생님 말씀은 타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급식소 단일안건만 가지고 검토했지 기숙사와 연계해서 생각할 못해 본 겁니다. 그래서 기획관리과에 관련부서에 얘기를 말씀 못드렸던 겁니다.

● 송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아마 평체과에 전달 안된 것 같아요. 여기 상당고 급식실 및 기숙사 증축공사안 1안, 2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모르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학교장직인 찍어서 이것이 기획감사실로 갔는지 평체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지만 시설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제기는 6월달에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동안에 검토할 수 있는 단계

가 많이 있는데 지금 평체과장도 이 부분이 사실 기획관리과에서 조정이 된다면 문제제기를 해줘야 되고 이 예산을 올리면서 내년에 우리 교육감님한테 구두지침이라도 받아서, 내년에 우리 추경에 예산이라도 좀 식당을 짓는 예산을 반영하는 전제로 해 가지고 이걸 올려보자 이런 조율된 얘기가 있어 가지고 현장에 나갔을 적에 집행청의 담당관이라도 와 가지고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육감하고 구두 조율된 부분입니다. 내년에 식당도 검토할 수 있으니까 우선 이 기숙사 예산만 국고에서 온 거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한계장으로서는 사실 내용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기획관리과장님은 아까 사적으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더 깊은 말씀은 안물겠습니다마는 그냥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줬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이 결코 예산 올리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되거든요.

사실 왔더라고 하더라도 올린 단계 물론 올려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겁니다마는 사업의 타당성, 사업이 과연 타당하냐 말아야 타당성검사를 하고 모르죠 교육감님이 올리라고 해서 올린다고 하면 문제가 다름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관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아 가봤더니 이것만 올려서는 안되겠다 거기에는 식당이 그 자리를 빼면 식당이 들어갈 자리 없구나 말이예요. 이런 문제제기 등등을 검토해야 되는데 전혀 검토한 흔적이 없어요.

국장님은 아주 아까 솔직하게 한번도 못가봤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여쭙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하고 국장님께서 다른 분 다 볼 것 없습니다. 내년에 거기 이 예산을 만약에 통과시켜준다면 우리 위원들로서 계획의 부실성이라든가 준비성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통과시킬려면, 다만 내년의 식당의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에 연계해 가지고 철거라든가 설계비라든가 또 명시이월해서 넘어가서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이라도 하나 들어야 우리가 통과를 시켜드리지, 그런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예산만 이렇게 무성의하게 통과시킬 수는 없다 이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나중에 답변하셔도 좋고 그건 국장님에게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나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기를 가보지 못한 불찰도 제게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총괄적인 책임을

제가 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제 불찰입니다.

그러나 통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뭐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검토를 하고 그 나중에 위치선정, 채광 등의 문제 또 기타에 수반되는 문제를 다 따집니다. 아마 우리 시설과에서 간한영성 계장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가 가지고 기숙사라는 예산이 편성되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장선생님으로서는 또 기왕에 기숙사가 이렇게 되고 그랬으면 식당도 또 급하니깐 식당문제도 거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식당도 급하고 또 기숙사도 급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보면은 식당이 더 급한 것 같고 어떤 때 보면은 또 기숙사가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됩니다. 아마 그거를 특교로 봤을 때 기숙사를 한다고 할 적에는 이미 학력이라든지 수능대비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 아마 기숙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국고를 얻어오는 예산에 보면은 식당보다는 기숙사가 예산이 큼니다.

가급적이면 큰 것을 요구해서 예산을 얻어오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기숙사부터 먼저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위치선정이라든지

사전에 저도 한번 가보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가신다고 그러면 소상하게 그런 걸 저희 직원한테도 알려줘 가지고 위원님들이 물으시면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이렇게 할텐데 하여튼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문제와 식당문제를 병행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국장님 현장을 안봐서 그런데 이게 떨어져서 이렇게 생각할 문제 같으면 제가 논의 안합니다. 떨어져서 장소가 있어 가지고 또 식당 지를 자리가 따로 있다면 통과시켜버리면 그만인데 식당이야 나중에 예산오면 내년에 하던 내후년에 하던 교육감이 알아서 집행하면 되는데, 문제는 현장의 여건을 가보시면 거기에다가 연계해 짓지 않으면 장소가 없어요. 다른 전문가가 보면 어디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불거져서 여기 논의되는 것이지 이것은 장소가 넓어서 식당을 다른데 지을 때 있고 기숙사 따로 지을 때가 있다면 여기서 국장님한테 왜 연기안했느냐 왜 조정안했느냐 이런 소리 묻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현장의 여건이 상당고등학교의 여건이 그 한자리에 그걸 빼놓으면 앞으

로 식당이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연계해서 같은 사업으로 올라가야 설계나 철거 등등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거기서 국장님이 연계해서 검토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검토를 하셔서 별도사업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평체과장님도 그 사업내용을 잘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도 그 부분을 해서 연계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은 그만 줄이겠습니다.

두 번째, 김전원 국장님께 아까 성용영 위원님이 29명의 원어민이 있는데 22명만 쓰고 7명이 지금 결국 아까 답변이 여러 가지 여건 주거의 여건이라든가 등등해 가지고, 그러면 현재 교원대학이 연수하고 교육부가 추천하는 그 사람들이 22명이 추천해서 온 사람들입니까? 국장님 22명은?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 도에서 신청한 인원 맞춰주느라고 거기서 1차 배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 송대헌 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도 전년도도 그렇고 전전년도도 그

렇고 우리가 신청한 만치 이게 안옵니다. 충북을 환경이 근무여건 등이 근데 한번 안오면 우리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걸로 끝내요. 우리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한 것이 있는가 어디 뭐 신문에 공고를 했다던가 어디 다른데 연락해서 응모를 했다던가 우리 예산 서 있는 충북의 원어민을 학교마다 절실히 요구하거든요. 그런 자구적인 노력을 안하고 아 응모한 사람이 이것밖에 없고 환경이 나쁘니까 22명이니까 그걸로 끝나고 연말에 와서 7명 감해서 예산 빼면 된다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게예요.

근데 요전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현지에 출장을 가 가지고 현지에 가서 잉글리시타운 얘기입니다. 캠프인가 타운인가 저도 자꾸 혼동합니다만 가서 원어민을 모집해 온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는 현지에 가든 여기서 있든 예산에 서 있어서 그게 1차에 교육부가 천거를 할 때는 국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담당관들께서는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신문광고도 좋고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죠. 해서 우리가 세운 29명이라는 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행정이고 우리가 조장행정이 아니겠는가, 교육부에서 준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손놓고 한다면 행정 손쉽죠. 그래서 이게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됩니다, 충북

이.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예산이 책정이 되고 인원이 책정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외국 현지에 가서 모시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채워서 사업목표를 달성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보충질문에 우리 성영용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금년도 지금 결산액에 보면 예금이자가 20억이라고 하는 큰돈이 줄었습니다. 20억이라고 하는 돈이 줄었을 적에 아까 답변을 세 가지인가로 해 주신 걸 내가 간단히 메모했는데 2.85%다, 보유자금이 감소됐다, 송금이 지연되어서 교부금이, 순세계잉여금이 2002년도 대비 365억이 감액했다 이렇게 지원과장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몇 가지 과장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적에 산출근거를 세우거든요, 산출근거 아마 그때 옛날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모르지만 산출근거에 아마 서 있을 겁니다. 산출근거보다 한 20억이 지금 와서 줄은 거예요.

그러면 산출근거를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운영을 이 금리가 이렇게 낮았는데 운영을 잘못했거나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자꾸 사람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지금 지원과장님은 자꾸 2002년도 예를

들어요. 2002년도에서 이렇게 2002년 대비 2004년에 1%줄었다는 걸 자꾸 아까 답변에도 그러거든요. 먼저 번에 내가 질의했을 때도 2004년 금리 대비 2002년 대비 1%가 줄었다 근데 2003년 대비를 하면요, 2003년 대비를 하면은 74억이었죠. 2003년의 이자가 3.1%였습니다. 3.1%에 74억의 이자가 들어왔어요. 2004년은 2.95%입니다. 2.95%이니까 0.15%가 줄은 겁니다. 0.15%가 줄었는데 지금 20억이 준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12월말보다 우리가 이자가 들어오는 거니까 12월말쯤 되면 금년의 당초계획 우리가 60억 얼마를 잡았던 그 목표액에서 20억이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도 언뜻 듣다가 아 과장님이 이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2003년 예를 안들고 2002년에서 2004년의 1%가 줄었다고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2002년 예를 드는구나 2002년에는 3.95%입니다. 3.95%에 90억의 이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2003년에는 3.1%에서 74억이 나왔습니다. 74억 한 16억 전년 대비 한 16억 정도가 이렇게 줄었었죠.

그런데 2004년은 2003년 대비 2004년은 이게 1%가 아니라 0.15%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국가에서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해를 해요. 뭐가 보유자금을 늦게 내려보냈던가 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꾸 지난번

제 질문에도 답변을 그렇게 하더니 오늘 성위원 답변에서도 2002년 얘기를 들면서 이렇게 1% 차이가 나니까 금리가 줄어서 이렇다라고 부각을 시켰는데, 그래서 운영의 잘못이라고 하는 점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는 이러한 금리의 체제가 있고 하나 운영 잘못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 교육감과 여기 교육금고 간에 약정을 맺습니다. 계약을 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아는 내용은 교육금고조례를 지난번에 제정하려다 교육감과 상대로 질문했다가 이게 해봤자 부작용이 크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농협밖에 없습니까해서 나도 공감되어 가지고 그 이상 더 질의를 안하고 금고선정에 공정성과 개선안만 촉구해서 많이 개선하는 걸 받았어요. 지원과에서 노력 점을, 그리고 작년 12월 28일인가 재계약을 또 3년 했습니다. 그 뒤에 재계약 한 다음엔 내가 일언반구 얘기를 안하는데 거기 재계약상에 조문에 선정하는데 보편은 요구자료 중에 여러 가지 요구자료를 내서 계약서식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말하자면 우리가 이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서류로다가 그런 것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런 거에 비추어 봐 가지고 또 하나는 저축성예금 중에서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금리가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장기저축 쪽에는 옛날에는 다만 금리 한 푼이라도 높은 곳으로 저축성예금을 이자라도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모든 것들이 협의과정에서 사실은 조례로 되면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위원들이 검토를 하는데 지금은 검토할 수가 없이 교육감하고 농협하고 일방적인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기서 이런 종류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받는 것은 금리가 장기 3년간 장기수입이 몇 %자리를 받더라도 아까 저한테 자료를 제시해 준 것이 있는데 전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종류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농협에서 제시한 것 중에서 물론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까마는 과연 그들이 금리가 한 푼이라도 오른 쪽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거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쪽에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교육청에 보관금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읍이라면 농협입니다. 읍이 취급하는 예금의 종목과 이율표를 저한테 주시고요, 세 번째, 우리 교육청이 선정한 예금의 종목과 이율현황 및 누계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2003년 11월 28일 금

고 재약정시 첨부서류로 제시한 금융상품별 제시금리 및 지방채발행시 대출제시금리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이래서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 이 자리에서 답변할 것은 이것이 운영의 잘못인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약정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운영을 잘못해서 20억이라는 돈이 잘못된 부분인가,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60얼마를 잡을 적에 이걸 잘못 잡아가지고 20억이라고 하는 이렇게 큰 차질이 나는 것인가, 아까 1%라고 하는 2002년 대비 2004년 금리 1%라고 하는 그걸 왜 2004년을 2년을 대비합니까? 2003년 대비 0.15%입니다. 0.15라고 한다면 작년수준의 이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작년수준의 이자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002년도를 자꾸 나오는데 이게 뭔가를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 재무과장님의 진솔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모면하려는 게 아니라 다만 우리가 한 푼이라도 이문을 더 챙기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교육에 투자되는 돈이 거든요. 그런 측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지금 내용들 깊이 있게 하셔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금리비교를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고, 2002년도는 분명히 3.95%가 맞습니다. 제가 있는 자료도 정확하게 이미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믿고,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에는 2003년도에는 3.1 내지 3.3%라고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85%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금 금리 하락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보유자금문제를 또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보유자금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3년도에는 1일 평균잔액입니다. 요것이 132억원이 2002년보다 줄었고 금년도에는 484억원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잔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리가 보유금액이 적기 때문에

정기예금 6개월짜리를 하든 또 3개월짜리를 하든 전체적인 수입은 줄어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세 가지의 원인을 했습니까마는 정확히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금액이 얼마 이런 분석까지는 죄송하지만 아직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그런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리라고 보겠습니다.

● 송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과장님께 더 여쭙겠습니다.

20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자에서 비올할 적에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당초 목표액은 전년도 0.15% 줄었으니까 그걸 감안했다라고 74억에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60억 정도 책정을 했더라구요. 0.15가 금리가 줄었으니까 아마 요렇게 추정될 것이라고 대단히 과학성을 타당성 있게 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당초 목표를 근데 12월말 임박해서 지금 와 가지고 20억이라고 하는 거의 60억에서 3분1에 해당되는 부분이 금리가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럴 적에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두 가지가 당초에 제시했던 것처럼 이게 운영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 하나하고 아니면 금리는 줄었다는 건 크게

설득력이 없거든요. 0.15니까 또 당초 목표액 0.15를 뺀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설득력이 없으니까 다만 아까 얘기했던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또 보유금을 낮게 내려와서 이런 부분이 아마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추측은 합니다. 이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그때 밝혀지는 건데, 앞으로 이 문제를 설득할 때는 금리가 낮았다고 이 목표로 할 때 금리가 낮았다는 얘기는 약간이지만 벌써 당초 목표세율 적에 깎아 세웠어요. 그 정도를 그 부분을 자꾸 지난번에도 강조해 주고 오늘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우리가 뭐를 따질 적에는 어디에 원인이 있는냐는 사실규명에 근사한 이론을 제시해줘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제시한 거지 뭐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많이 개선한 노력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 점은 알아요.

그러나 교육위원으로서서는 다만 한 푼이라도 우리가 아까 노는 자금 모아들이는 건 아주 좋은데요.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이자를 높여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당연히 우리 교육위원들은 알아야 되고 또 따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하세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들 뭐라고 그럴까 습성 내지는 이런 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편은 세출에 비해 가지고 세입 예산은 통상 많이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도 사실은 좀 많이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위원님께서서는 소소하다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도에서 보편은 아까 우리 과장이 보유자금하고 송금지연이 있다 했는데 송금지연부분은 상당합니다. 그거는 제때제때 미리미리 돈을 줄 때하고 한달 이상 이렇게 연체해 갖고 몇 백억씩 이렇게 올적에 그게 오게 되면 제때 돈을 못 찾으면 기존에 예치했던 정기에금을 해지하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실질적으로 금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0.15%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0.23%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습성상 보면 아까 어떤 예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만약에 모자랄 때는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과대하게 이렇게 해서 편성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예산의 경우에는 아주 타이트하게 짜는 예산도 있고

또 세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세입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세입을 많이 계획을 무리하게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무리하게 운영을 물론 잘못해서 그런 건.....

● 송대헌 위원

잘못했다는 쪽은 그런 쪽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산출논리상에 당초에 2004년도 목표액을 60억정도 잡았을 적에는 그냥 잡은 것이 아니더라도 2003년도 3.1%일 때 74억원이 나왔으니까 거기서 0.15를 빼 가지고 목표액을 잡은 거예요. 과학적으로 제대로 맞게 잡았어요. 논리가 맞게 지금처럼 조금 늘려잡은 것도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했는데 그것이 20억이라고 하는 줄은 원인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20억이나 줄은 부분이 0.15에서 줄은 부분도 있겠죠. 아까 말씀한 대로 0.15라고 하는 부분도 크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죠.

이건 보관금이나 그런 쪽에 더 클 것 같아요. 내려보내는 돈 그래서 그쪽을 강조해서 했는데 지난번 저한테 설명한 것 속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성위원한테 답변할 때 들은 얘기는 분명히 2002년 대비 1%라는 얘기를 메모가 되어 있거든요. 속기록을 확인해 보겠고, 0.15

라는 걸 강조한 것이 아니라 0.1% 메모했던 말이에요. 연필로다가 그 부분은 속기록에 검토를 해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는 진솔하게 2003년 대비 0.15줄었는데 그 부분은 대개 얼마정도 줄었고 저기서 내려오는 돈이 지나고 보니까 3분1이라는 돈이 20억이 줄었던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알차배기 금융이라든지 뭐든지 있을텐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몇입니다.

이래서 다시는 우리가 금융에도 무슨 종류에 따라서 한푼이라도 더 받는 이율이 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자료를 받으면 제가 알겠죠.

잘 하셨을 걸로 압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를 모으고 하는 것이 생산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또 누가 봐도 20억이라고 하는 이자가 줄었다 할 적에 묻지 않고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 하는 부분을 챙겨야 하니까 과장님 좀 수고스럽더라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과장 조계환입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적시해 준 그런 내용들이 그런 자료로 분석을 해보면 나름대로의 운영상에 혹시 잘못이 없을까요

런 것이 밝혀지리라고 믿고 또 자금운영을 충실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서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 송대현 위원

열심히 하셨겠죠. 그렇게 보충질의를 하고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운호고 다목적교실 신축 11억 9,000만원 특별교부금 계상했는데 그걸 난 아주 대단히 좋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충북여중을 갔다왔을 때 교장 선생님이 충북여중 교장선생님이 아주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운호학원은 학교가 다닥다닥 지어있는데 공간이 하나 없고 다목적교실 하나 강당하나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당 뜯었던 자리 그 자리에다가 운호학교의 모든 학교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걸 교육감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다목적교실이나 큰 강당을 하나 짓는 게 숙원사업이다 대단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 부지가 아주 작거든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 중학교나 여러 학교가 무슨 학예활동이라든가 행사에 다목적교실 하나는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지어줘야 될 것 아닌가 해서 교육감님한테도 사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 다목적교실 강당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올라온 것은 운호고등학교로 이렇게 국한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위치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고 운호고등학교에 한정해서 쓰도록 지어 있는 것인가 운호학원 전체가 공유해서 다 같이 활용하도록 그런 계획하에 이걸 짓는 것인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학교가 공동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송대현 위원

그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주시에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어 가지고 참 영광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요번 2억을 지원하죠. 거기 청주시에다가 지원하는데 그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 걸 보니까 프로그램 및 기관간에 연계라고 그랬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알겠는데 기관간에 연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사업설명에 기관간의 연계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청주시에 평생학습도시 2억원 70페이지 주요사업 70쪽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여기 2억원에 대해서 기관간에 연계라고 하는 것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데 청주시와 협동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연계하는 겁니다.

● 송대헌 위원

나는 2억을 청주시장 앞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관련해 가지고 우리도 관여하고 그리고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2억은 국고에서 도시가 선정이 되면 주고 그 다음에 1년에 1억씩 3년간 주고 그 다음에 청주시에서 자구 노력을 해 가지고 6억 5,000정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센터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 2억은 우리가 주는 겁니다. 국고에서 나오는 걸

● 송대헌 위원

국고에서 나오는 걸 넘겨주는 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넘겨주는 겁니다.

● 송대헌 위원

주는 걸로 끝나시죠. 우리가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될 같이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아닙니다. 2억원은 그냥 넘어갑니다.

● 송대헌 위원

나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기관간에 연계해서 청주시와 우리 교육청 같이 무슨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하는 게 있는가

하는 걸 여쭙봤던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송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3회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쪽에 국고보조금이 14억 2,219만 5,000원 감편성이 됐는데 아까 그거를 과장님이 설명해 줄 때 위에 몇 가지는 국고보조를 특별보조자원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감됐다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장애아교육지원 그 다음 학교도서관활성화 특히 학교도서관활성화에 13억이 감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활성화사업비는 당초에 국고보조금으로 13억이 교부예정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특별교부금으로 6억 5,800이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감액이 6억 9,42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전체적으로 13억 감액은 아니다 그 얘
기죠.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6억 9,400이 감액된 겁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7차 교육과정의 주요핵심사항
중에 하나가 학교도서관활성화인데 지난
번에 감사 때도 교육감님께서 2007년까지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던지 하여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러면 그 사업에
차질이 없는 건지?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요 부분은 국고에서 다 지원이 됐으면
감액되지 않을텐데 그거에 특별교부금이
없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이렇게 감액이 되
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감
액되는 부분이고 요것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완급을 가려 가지
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차질되는 부분
은 없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래서 아까 위에 장애아교육지원 그
문제하고 학교도서관활성화 부분은 교부
금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다른 예산에서

라도 꼭 차질없도록 그렇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 장애아부분은 워낙 수가 줄고 이렇
게 해서 감액되고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차질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지금 도서관활성화 같은 부분이
투자되는 부분이라 문제가 됩니다.

● 이상일 위원

금리관계는 앞에 위원님들이 소상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말씀안드리고, 87쪽에
사유지매입 부분에 대소초등학교에 2,030
만원, 괴산중학교에 1,640만원 계 3,670
만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유를 보니까 대소초등학교의
2,03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유치원사 앞
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
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매매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므로 매입이 불가능
함 이러면 애초부터 이거를 협의도 안하
고 예산을 계상한 건지 팔 뜻이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값이 안맞아서 안판다고
그러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당초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했을 적에 판다고 그랬다가 나중
에 후자에 그러니까 해당되었습니다. 나
중에 마음이 바뀌어 갖고 전혀 팔 의사가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학교 토지매입 같은 거라든지 이런데 보편은 매입할 적에 의사가 있다가도 나중에 이렇게 변경되는 때가 많습니다. 이 분도 아주 저희들을 당혹하게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예산계상을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사전에는 다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예산도 계상했던 것입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판다고 그래 놓고 바람이 들어갔는지 누가 더 받을 수 있으니 뻔이라든지 하니까 안판다고 빼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애초에는 그쪽과 협상을 했는데 그렇게 된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저쪽에서 팔 의사가 없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임해수련원 직원숙소 확충 관계는 아까 김남훈 위원님께서 물어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숙소를 건설하려고 그럴 때는 연수동 5층에 증축하려고 그랬던 거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맞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근데 증축하려고 계획을 세워보니까 그 옆에 한밭대학인가 어디 그 대학과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연면적 이런 것 때문에 건축이 불허가 된 거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맞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담당공무원도 되는 걸로 알고 또 우리측 연수원에서 되는 걸로 그냥 생각했던 거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있습니다. 보통 건축법에는 건폐율 50%, 용적률 100%이던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용적률이라는 것이 건축법상에는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대개 관광지라든지 이런데 보편은 지하층을 포함하지 아니한 걸로 하니까 고층같은 거를 제한하게 되면 지하층으로 무지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지하 5층까지 파고 들어가서 실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 그 용적률을 지하층을 포함해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편은 처음에 임해수련원을 지을 적에 1차 짓고 2차 공영장시설 지을 때까지만 해도 용적률이 지하층을 포함해 가지고는 건축법상에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거기 100%미만입니다.

그런데 대천시청에서 보령시청에서 제 시한 용적을 지하층을 포함한 걸로 하게 되면은 사실 조금 오버가 되는데도 1차고 또 2차고 다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숙소를 지으려고 할 적에도 가서 담당자 얘기는 그때까지도 종전대로 하는 것이다 아마 이런 언질도 약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에 계산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숙소는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의 빈 부분을 땡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을 것이다 해 가지고 허가를 했는데 그즈음 해 가지고 담당자가 보령시청에 바뀌게 됩니다. 새로 온 담당자는 그건 안된다 여러 사람 다른 피해자도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사실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걸 싸워서 소송을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부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자체를 지금 대천해수욕장 근처를 전부 그렇게 고시를 해서 묶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를 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보령시에서도 몇 억을 들여서 그걸 해야 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법적으로다가 싸

워 가지고 이겨서 한다고 그래도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하튼 간에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 불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일 위원

그래요. 이것도 앞으로 법규 같은 것을 좀더 꼼꼼하게 따져서 될 건지 안될 건지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거기 직원숙소 아까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 얘기까지 나왔는데 직장 위에도가 사택을 지어서 거기서 공적 생활인지 사적 생활인지 구분 안되게 하는 것은 사실 저도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왜 아무 소리를 안했느냐 하면은 거기 빈 공간에 건축비가 좀 덜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아무소리를 안했는데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 직장을 퇴근을 하면 다른 데로 나가야지 바로 위층에 올라가서 사생활인지 공생활인지 모르게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문제는 꼼꼼하게 따져서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한테 2004년도 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취득에 상당고등학교 기숙사, 제천디지털고등학교 다목적

교실 쪽 해서 남일초등학교, 예성초등학교, 학생종합수련원 이래가지고 끝에 추정금액이 나와요.

근데 그 추정금액하고 우리한테 2004년도 시설사업 현황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 액수가 틀려요. 우리한테 요거주실 때는 시설비만 올려주셨고 이쪽 뒤에는 설계비, 부대시설비가 포함이 됐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것만 받아 봤을 때는 상당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비가 10억 229만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걸 보면은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10억 8,800이예요, 여기에는.

충주 예성초등학교도 여기는 다목적교실 신축 그래서 9억 5,600인데 여기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10억 100만원 이거는 통일해서 주셔야지 어차피 이게 통과가 되어야 이 액수가 맞는 것 아닙니까?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국고교부금 받은 중에서 설계비와 부대비 부분을 구분해서 지금 예산에 사업편성을 하기 때문에 실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는 시설비 건축비만 거기 올라가 있고, 실제 예산상에는 국고 받은데에서 설계비와 부대비를 구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총예산은 맞지만 서류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재산 가

올라가 있는 부분하고 실제 공사비 포함해서 다목적교실확충 시설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래야지 내가 그래서 이걸 취득할 때 이쪽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으로다가 올려주면 안되느냐 그거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속에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취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의 가액을 적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지금 시설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설계비라든지 부대비용까지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아서 지금까지 관행상 시설비와 부대비를 제외한 금액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래 우리 생각에는 집 지을 때는 설계비 뭐고 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 취득가 달랑 근데 우리가 모를 때에는 이 9억 5,000 가지고는 여기서 설계비 떼어내고 감리비 떼어내고 부대시설비 떼어내면은 아 그 조그마한 거 가지고 무슨 강당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제 얘기가 꼭 맞는 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에 이게 얼마짜리다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통일을 기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건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 통일을 기하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리고 소방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당을 짓는데 그전에는 스프링쿨러입니까? 그런 거를 안해도 되는데 지난 9월인지 언제 이후에 바뀌어 가지고 다중시설에는 소방시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당하나 짓는데 약 1억 2,000만원의 소방시설비가 들어간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그건 저희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시도교육청이 다 공히 해당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와 해당부서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아마 해야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6억짜리 공

사하면서 1억 2,000만원짜리 스프링쿨러 달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달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도 또 필요가 없고 교실 같은데 스프링쿨러 달아 가지고서 그 스프링쿨러라는 게 보편은 여기 환기 뚫어놔 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물 왕창 쏟아 붓는 건데 과연 그게 필요하냐 공연장 같은데나 필요한 것인데, 일부 학교에 있는 강당부분을 그걸 적용하라고 하는데 강당부분도 상당히 우리는 공연성 강당이라고 보다는 학습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국장님 이게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갈 거죠. 그러면 1월 달부터는 바로 설계용역을 줘야될텐데 만약에 액수가 준 다든지 안준다든지 명확해야 설계를 하지 1월부터 설계는 해야될텐데 그 지침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선에서 업무의 차질이 오지 않겠어요.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소방법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소방방재청에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충청북도교육청뿐이 아니고 전국 시도뿐 아니라 지역교육청까지 다 질

의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재청에서도 일단 소방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결정을 하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지금 협의해서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지침을 주겠다고 이렇게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준용해야 될 걸로 알고 있지만 향후 교육부하고 소방방재청하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변수가 없으면 시설비는 별도로 더 내년 추경에도 상정해야 되겠죠.

● 시설과장 안세열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이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지 1시간이 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진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진옥경

진옥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서 지금 올라왔는데 예비비 증액편성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예비비가 한 45억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교육문화회관건립 관련해서 특별교부금 17억 5,000만원이 왔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중 인건비 감액조정 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 간사 진옥경

그렇습니까? 그 외에는 다른 부분은 없는가요? 총 17억하고 사립학교인건비 재정결함보조가 얼마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또 이게 다 하면 사립학교재정비 중 인건비 감액조정은 한 40억정도 됩니다. 다른 부분은 늘어난 부분도 있어서 감액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증감하다 보면은 한 45억정도가.....

● 간사 진옥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질의사항으로써 대학수능 관련해서 감독을 할 때에 이기요원이라고 있는데 이기요원이 어떤 것입니까? 사항 별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9번 감독관 및 관리요원 중에 이기요원이 있는데 제가 모른 체로 그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질 의드리는 겁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시험장별로 있는 이기요원은 수험생들이 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 원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개인별로 OMR카드까지 다 작성해서 내주시는데 그거를 저희가 평가원으로 제출하기 위한 최종적으로 통계표를 작성하고 그러는데 표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라고 그럴까 관련되는 사항들을 모두 다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 요원들 인원이 이기요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진옥경**

그러니까 옮겨서 적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용어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어려운 용어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정학습 지원체제 부분에서도 영어용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주시기

를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는데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전체 예산부분에서 아까 성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성립전 집행에 관련된 자료가 바로 심의직전에 위원들 앞에 놓여지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산사건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뭐랄까 성립전 예산의 개념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기수**

그럴 경우는 지금 정계장님께서 예산계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 **간사 진옥경**

모든 예산은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것을 사전에 집행할 수 있고 성립 전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인지 집행청이 정한 부분이 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예산담당 정명환**

예산담당사무관 정명환입니다.

지금 진옥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모든 예산은 위원님들의 사전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볼 것 같으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예산성립전 전액 국고로 교부가 되어 갖고 저희들 자체예산을 안보태는 예산 요거는 저희들이 예산성립전에 사용을 하고 지금 예산서에 계상을 하고서 예산서에 전부 부기를 했습니다. 성립 전이라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추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성립전에 사용해서 보고를 하더라도 사실은 어제 당장 내려온 거라든지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상당부분 기간을 두고 내려왔던 부분은 앞으로는 사전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법상은 물론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진옥경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규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규정이 왜 생겼느냐 하면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재해구호 그 다음에 국고에서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온 부분이라면 이것은 긴박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국가에서 준 돈을 마음대로 그냥 미리 써도 된다는 이유는 그것이 불요불급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용전 한 부분에서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들 오늘 바로 직전에 받았던 그 내용들이 이미 행사가 진행된 무슨 체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평생체육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이 먼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교육정보화에 관련해서 국가적인 표창을 받은 지역교육청으로써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 있는데 이것에 관련한 예산이 3억이 내려왔죠. 그랬는데 그것이 급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6개월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집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예산담당 정명환

예산담당사무관 정명환입니다.

지금 2004년도 교육정보화평가 우수교육청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국외연수가 지금 요번에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기 전에 실시가 됐습니다. 그 경비 2,500만원하고 다목적 멀티비전에 필요한 설계비 1,100만원 그

래서 저희들이 3,600만원만 성립전 사용하고 나머지 2억 6,400만원은 지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2억 6,4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 **간사 진옥경**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왜 집행하셨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불요불급성을 저한테 납득을 시켜보시란 말씀이죠.

● **예산담당 정명환**

국외연수는 벌써 기왕에 끝났습니다. 성립되기 전에

● **간사 진옥경**

아니 글썄 국외연수를 왜 그 기간으로 잡아서 끝내셨느냐구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국외연수 부분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해당 시도교육청이 몇 군데 안됩니다.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할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 계획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간사 진옥경**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불가피성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목적멀티비전 있죠. 이

것의 설계를 주셨는데 1,100만원인가 지금 됩니다. 이것이 왜 불요불급합니까? 그렇게 긴박성을 다투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이걸 집행하려다 보면은 그 부분만이라도 먼저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을 하지 않고 이번 추가경정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간사 진옥경**

그런 설명을 제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지금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점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지금 통과가 된 이후에 지금 여기서 통과가 되고 또 도의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12월 중순이 넘습니다.

● **간사 진옥경**

그렇다 하더라도 설계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아니 그렇게 하다 보면 금년 내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 **간사 진옥경**

설계의뢰를 하면 되는 것이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돈이 예산이 있어야 설계의뢰를 하는 거지 예산도 없는데 설계의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간사 진옥경**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전에 임해수련원 문제가 있습니다. 임해수련원에 관련한 제가 언론보도를 봤을 때는 이 설계비를 갖다가 미리 해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주었는데 그것이 지자체 아까 법률이나 거기에 위배되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비를 받지 않도록 중용했다는 그런 제가 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12월 중순에 해도 되는 일이죠. 그리고 적어도 교육위원회 의결정도는 받은 후에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나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집행이 되어야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긴박하다고 보고 지금 사전에 이것을 하십니까? 이것은 저는 제가 맨날 지난번에 다목적멀티비전 설치를 교육청 앞에도 할 때 그 예산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어떤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거야 기존에 서 있는 예산 갖고 한

것입니다.

● **간사 진옥경**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2004년도 예산 어디에도 다목적멀티비전이라는 명목으로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동영상자료에 해당되는 운영부분에서의 800만원이 그 다음에 몇 회째 1회 추경인가에 올라왔습니다. 그러기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통과시켰는가 해서 2003년도부터 해 가지고 추경을 계속 봤는데 본예산이라든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멀티비전을 거기에 세우는 예산이 어느 예산에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설과에서 그것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전시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청에서 미리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국가에서 온 상금이니까 먼저 쓰고 보자 이런 편법적인 그런 것을 부추기는 배짱으로 지금 이것을 밀어붙이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편법이라고 그랬으면 이걸 법상 편법도 아닐뿐더러 설혹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3억을 전부다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서 했다든지 이렇게 할텐데, 아주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 **간사 진옥경**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해수련원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계획 없이 직원숙소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설계를 맡았던 건축업자의 설계를 받지 말 것을 종용해서 경리담당부서에게 집행의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아까 제가 임해수련원.....

● **간사 진옥경**

네. 다목적멀티비전은 본예산에 2004년도 본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아까 임해수련원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치과정에 그러나 여하튼 간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워 놓고서 제때 건축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관련해서 교육감님으로부터 상당한 부분 질책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공무원들 전부 문책을 묻고 했습니다.

● **간사 진옥경**

제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느냐 하면 설계비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멀티비전의 설계비를 미리 구태어 지금 12월 저희 예산심의 전에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이것을 미리 사용전으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미리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를 붙여도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나서 금년 내에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면 지금 교육위원회도 오늘 끝난다고 12월 오늘 며칠입니까? 3일이 아닙니까? 도의회에 지금 본예산 끝나고 나서 추경예산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12월 중순이 지납니다. 그때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려면 늦습니다.

● **간사 진옥경**

뭐 12월 말에 3-1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런데 지금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12월중에 꼭 반드시 어떻

계.....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아니 일다시(1-) 예산이 있던 없던 간에 지금 금년에 집행하려다 보면은 늦어지지 않습니까?

● 간사 진옥경

그거 어떠한 이유로 다른 지역교육청에 한번 제가 다시 의뢰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사전의결 부분을 간과하고 먼저 하신 것은 틀림없고 또 그것의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통상 성립전 예산 사용보고 하는 부분도 물론 시도교육청마다 다들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이 사전에 보고드릴 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에 위원님께서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통상은 우리와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추경편성을 한다든지 할 적에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진옥경

그러면 다목적멀티비전을 설치해서 효과 같은 것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죠.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평가까지는 안했더라도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주위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 간사 진옥경

그것이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글쎄요. 보는 분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간사 진옥경

왜 대다수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어제오늘 제가 교육청을 통해서 보고 받은 것만 해도 교육청은 책임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제가 모든 것을 교육청이 다 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능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청북도 관내에는 없다고 장담하시더니 지금 그것이 학원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단양군청을 통해서 단양교육청으로 간 부분에 대한 유용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충주 쪽에서는 지금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후진성 이질이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들은 이야기만 해도

계속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면만을 멀티비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은폐하려는 그런 것들과 맞물려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글쎄,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멀티비전을 설치한 것은 그 이전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상당한 부분 잘된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하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간사 진옥경

아니 그런데요. 지금 그것에 대한 평가나 또 지금 현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반성도 없이 이런 부분들을 사용 전에 설계를 의뢰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지금 홍보 멀티비전이 설치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도 채 안됐지 않습니까? 지금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 간사 진옥경

그런데 또 하나를 만드신다니 지금 말씀이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평가를 하게 되면은 지금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거 하나하나 하는 걸 갖다가 평가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행정낭비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간사 진옥경

아니 전후좌우에 그렇습니다. 자랑 끝에 시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보감사담당의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지금 정보화과에 내려온 상금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이것이 온당한가 또 이런 것은 타당성을 적어도 저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설계에 들어갔다는 말씀에 제가 이 부분을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이 시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이것을 기정사실화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미 그것은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머지 2억 얼마가에 해당되는 것들도 이미 그것은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랄까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기정사실화 한 것입니다.

이것에서 결국은 일부만을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 놓고 지금 교육위원회는 완전히 그것을 그대로 뒤따라가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을 일단 지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마치겠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상당고등학교 기숙사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뭐랄까 사전의 의논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았다 또 실과간에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충분했고, 또 학교측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현장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만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기숙사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집행청에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내가 넓어서 통학하는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숙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맞습니다.

● 간사 진옥경

그런데 지금 상당고등학교나 지금 제가 지금 제4대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심의한 그 예산은 옥천고등학교, 황간고등학교 여기에 신축하고 제천고등학교 개·보수, 과학고등학교, 괴산고등학교 개·보수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타 세광고등학교라든지 충북고등학교, 음성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곳의 다른 기업체들이 기숙사를 설립한 예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해당학교에 갔을 때도 서울대를 몇 명 들어가고 연·고대

를 몇 명 들어간 우리 이런 빛나는 학교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토탈을 내시고 저희 교육위원들을 설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대학입시 위주가 교육이 교육 자체로 이해되는 이런 통념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여전히 어떤 관내가 넓어서 통학편의를 위한 기숙사가 아닌 다른 용도의 기숙사를 왜 자꾸만 지으시려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상당고등학교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짓는 게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 간사 진옥경

그러면 거기에 수용하는 아이들을 통학거리 먼 순서대로 뽑나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운영문제는 이제 해당학교에서 결정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 간사 진옥경

얼마나 멀길래 그것이 멀다 합니까? 멀리서 오는 아이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진천에서 통학하는 경우를 봤지만 학교근처 원룸을 얻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째서 통학거리를 배려한 상당고등학교의 기숙사가 필요

합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렇게 따지면 지금 기존에는 있는 청주시내에 19개의 인문계고등학교 중에 한 7개 고등학교가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기숙사를 지었겠습니까? 다 같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 간사 진옥경

같은 이유라는 것이 글썄 지금 거기가 아이들을 먹고 재우고 하면서 공부하라고 지금 대학교에 일류대학교에 들어가라고 지금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공부도 하고 또 먼 거리 통학생들의 불편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간사 진옥경

그렇게 생각하시고 싶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공부를 하라고 해서 지어주는 것이 그게 큰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 간사 진옥경

아니 돈을 그러니까 투입된 그런 비용을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실태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일선학교에서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정말 매월 치는 고사에 따라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성적에 따라서 아이들을 집어넣지 지금 이것을 먼 거리 통학으로 해 가지고 어떤 청주시 관내에서 아이들을 지금 기숙사에 지금 배정합니까? 그러면서 상당고등학교를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지금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맥락으로 저는 봅니다. 어느 학교에 누가 더 많이 들어갔다 충청북도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차원에서 지금 학교에 먹고 재우고 엮어지면 코 닿을 때에 지금 있는 아이들도 거기에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용암동 부분에서의 아이들 사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의 아이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사교육의 의존도 많이 하고 또 자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잘 보살펴서 결국 이런 식의 성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기숙사를 여기에 짓는 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 국고보조를 받게 되어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저께 안용균 과장님을 통해서 들은 것은 국고에서 내려왔지만 실제로는 학교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교육청이 받아서 교육청이 다시 교육부에 신청을 하고 그 돈이 다시 내려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내에 괴산이라든지 또는 보은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러면 기숙사가

없는 학교 관내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학교에서 그것을 예산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예산 신청하고 그것들을 시행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굉장히 어제 마음이 가깝했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역할이라는 것이 단지 그렇게 일류대학교를 몇 명 보내는 것에 급급해서 그것이 성적의 어떤 교육청의 존립의미인양 이렇게 선전하는 것 이것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도 물론 필요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것입니다만 저희들도 학교학생 중에서 원거리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교육부에다 요청을 하게 됩니다.

● 간사 진옥경

아니 글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거리중심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를 주장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글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간사 진옥경

글썄 지금 그런 부분에서 상당고등학교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사교육의 공교육도 물론 선생님들이 거기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실테고 또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비교적 부유한 그런 주변에 어떤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먹고 자고까지 학교에서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아이들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거기에서 선발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난번에 제가 청주외고를 갔습니다. 외고의 기숙사를 신축했죠. 신축예산을 저희가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의 말씀을 50%는 원거리, 50%는 성적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청주외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뭐랄까 특수목적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그래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고등학교가 풀리기 시작하면 정말 그야말로 청주시내 관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다 해줘야 되고 그러면 농촌에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이기수

진위원장님 지금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 회의진행관계를 가만히 살펴보

니까 지금 진위원님이 주장하는 면도 일면이 있고 또 저쪽 주장은 저쪽 주장대로 또 주장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쪽이 어느 부분을 설득을 하기 위한 시간을 소요하느니보다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들사이 간담회에서 결론을 지우도록 하고 요 문제에 관한 한은 이걸로 종결을 두 분 사이에 하도록 합시다.

● 간사 진옥경

시간이 제가 얼마나 썼습니까?

● 위원장 이기수

아니 다른 질문은 얼마든지 하라는 얘기고 진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항이 질의할 사항이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 간사 진옥경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예산이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교육청의 목표라든지 그런 사업의 어떤 방향성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이죠.

● 위원장 이기수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모든 위원들이 충분히 진위원님 말씀하는 것 들었고 또 집행청 답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에서는 그 부분이 정말 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이게 맞다 방향이 이렇게 했을 경우는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해서 진위

원님의 의견에 동참해서 삭감할 수 있고 또 그런 거니까.....

● 간사 진옥경

알겠습니다.

제가 대다수 위원님들 어저께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해로 넘기고 그 다음에 급식소를 거기에 추가로 짓는 그런 형태로의 생각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가 의사표현조차 집행청의 어떤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할 수조차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예산심의나 이런 부분들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은 앞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결국 교육위원회의 어떤 존립 의미랄까 또 교육청이 왜 거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와 연관되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임대재산이라든지 폐교에 관련한 매각 재산들이 잡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저한테 한 지역에서 지금 폐교의 임대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저한테 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관련해서 학교운영지원과에다가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로 우리 교육예산에서 임대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혹은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는 그런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제가 답변을 받았고 일부는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답변을 주시기로 제가 한지가 11월 26일인가요, 7일인가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예요. 교육위원이 어떤 뭐랄까 이의제기를 받아서 이것을 맨날 열흘 기다리는 서면질의만 해야 됩니까? 이것의 전화를 통해서 답변을 주겠다고까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이유를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에서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가 창작 활동에 대한 효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1,000분의 30%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한 것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많은 시도에서 1,000분의 10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타도와의 형평성문제 이런 걸로 해서 의견을 개진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위원님께서 현황조사를 해서 그런 자료를 일차적으로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를 개정해야될 사항입니다. 효율을 정하는 것이 그래서 행정처분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리는 것이고, 또 타 시도에 지금 폐교재산의 용처별로 다른 것뿐만 아니라 다른 효율도 적합한지 이런 것을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근간으로 해서 내부의견을 모아서 전체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진옥경

아니 타 시도의 예를 1,000분의 10정도인 사례를 저한테 언제 주셨는지, 저한테 답변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 1,000분의 10정도라는 다른 지역의 저기가 있고 대체적으로 어떤 법규는 1,000분의 30이하로 이제 규정했을 때 우리가 최상한선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그것의 어떤 뭐랄까 우선 순위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교육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에 그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그리고 또 효율도 1,000분의 10정도로 낮춘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의지가 없는지 조례가 있을 때까지 시간

이 걸린다고 한다면 해당의 어떤 민원성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것에 대한 선처나 아니면 배려차원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으신지의지가 없으신지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시도간에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저희가 특정부분에 대해서 요율을 높이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재산수입과도 관련되는 것이고, 주로 폐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000분의 30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하한선이 1,000분의 10 이상에서 1,000분의 50까지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전체 폐교재산의 임대요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로 인한 연간 임대수입도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현재 각 시도의 조례 이런 사항을 전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일차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부의 의견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조례의 요율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 간사 진옥경

그 필요성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우선은 일차적으로 이거 요율을 조정했을 경우에 금액이 얼마정도의 연간 수입액이 줄어들 것이냐 또는 늘을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또 두 번째.....

● 간사 진옥경

그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8억정도의 임대수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3%라면 1%로 줄었을 때 나오는 거는 즉각 나오는 것 아닙니까? 뭐 시간이 걸립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아니 용도가 용도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폐교도 예를 들어서 폐교뿐만 아니고 폐교만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농경지 관계도 있고 주거용 토지관계도 있고 복합적으로 해야됩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현황도 분석 중에 있고 중용을 지키면서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 간사 진옥경

어쨌든 폐교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교육청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들은 우리 충청북도와 다르게 그 20명 이하인 경우에 폐교를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

들도 그보다 못한 인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분교를 오히려 본교로써 격상시키는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상당고등학교의 정말 학부모들의 빗발치는 요구들을 받아서 그 학교에 바로 앞에서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 가지고 먹고 재우는 일들보다도 어떤 면에서 교육청이 그것을 더 고민을 해야되는 것이예요.

그리고 지금 농림부 같은 경우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에다가 예산지원을 더 많이 하도록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교육청도 그런 것에 발맞추는 어떤 생각의 전환들을 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몇몇 시군만 위주로 하는 그런 충청북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볼 때 학교나 이런 것들 아이들의 이동, 학부모들의 이동이나 이런 과정들을 볼 때는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서 계속해서 어떤 뭐랄까 도시로 유입하는 이런 악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님들이 다 기속사 찬성하신다고 많이 하셨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있습니다마는 중첩되는 부분

들도 있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하나 정정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기요원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또 하나의 요원이 있는데 두 가지 요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현장에서 맹인이나 약시, 뇌성마비, 지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마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조해주는 요원도 이기요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 간사 진옥경

거기에 해당됩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 보면 변상금이 845만 2,000원, 지체상금이 3,162만 8,000원 이렇게 해 갖고 변상금 물리고 지체상금 물리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뭘니까 이만큼 변상을 시켰다면 뭔가 잘못이 있다는 얘기고 또 건축이 정말 예정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얘기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

고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우선 변상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은에 삼산초등학교에 중초분교장이 있는데 그 대부를 받은 자가 지역교육청의 허가없이 오래된 플라타너스나무를 고사를 시켰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이 밝혀지고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플라타너스 7그루를 고사를 시켰기 때문에 평가에 의해서 변상하도록 해서 176만원을 변상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성 생곡초등학교에 담뱃불 부주의로 인한 추정되는 화재가 있어서 차고가 전소가 됐습니다. 차고일부가 파손되고 학교버스가 소실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자들이 금액을 변상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648만원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관련자면 됩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교장과 방화관리자, 당직자 이렇습니다. 그곳에는 전기가 가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인데 밤중에서 나서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담뱃불로 일어난 일이 아닐까 이렇게 경찰에서 추정하고 있는 그 변상금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약금 내용은 아까 성위원님께서

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종 공사나 설계용역 또 물품납품에 따른 지체상금인데 향후 앞으로도 그렇고 공사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재해복구비가 증평정보고등학교 외에 2학교가 있는데 이게 7억 7,000만원입니다. 과학교육원에서는 설해비는 어떻게 언제 먼저 편성이 되어 갖고 전부 집행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2회 추경시에 국고보조하고 재해복구공제회에서 받은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배정된 것이 증평정보고 화재 나서 보상받은 겁니다.

● 위원장 이기수

보수 및 감사지적 회수금 내용이 5,100만원인데 감사에 지적되어 갖고서 이걸 회수한 게 있습니까? 뭐 잘못됐다든지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주로 보수를 과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서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대상 기간이 지났는데 했다가 요런 것이 매년 누적되어 있고 그로 인한 변상액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저기고 그 다음에 시설감사시에 역시 설계를 과다하게 설계했

다든가 요런 것이 정기감사시에 적발되어서 관련자로부터 변상받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그러면 과다지급분에 대한 회수 이결로 그칩니까? 담당공무원에 대한 과다지급에 대한 문책부분도 이거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정말로 교육예산이라든지 국고를 아껴야 할 그런 위치에는 있는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해 갖고서 국가적인 손실이나 교육적인 예산을 결국은 소모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회수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에 대한 일정한 경고라든지 이런 후속적인 조치는 없었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그건 제가 직접 감사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가 곤란합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부 감사를 해 가지고 변상할 부분은 변상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양에 따라서는 주의·경고도 주고 다 조치했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다 처리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아니 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했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징계위원회라든지 또는 그 외에 어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징계를 할 부분들은 징계도 하고요.

● 위원장 이기수

관리 잘해야 되겠습니다.

과다하게 파약을 제대로 못하고서 과다하게 지급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축설계공모를 과장님 하셨죠. 근데 거기서 최우수작품을 우리가 선정을 해 갖고서 상금도 주고 그걸 우리가 바이오문화회관 건축설계를 우리가 확정하는 얘기인데 먼저 최우수작품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작품을 선정한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그때 당선작이 없고 입선작 2편해서 또 그 공모를 하게되면 상당부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편 공모하는데 대개는 2,3천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 입선했던 분들에 대한 상금은 1,000만원씩 해서 줬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위원회에서 좋은 작품이 없다고 결정이 내려져 가지고 다시 조달청에다가 PQ방식에 의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작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사실 애초계획에는 건축설계공모에서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걸로 보고 그중에서 하나를 선정해 갖고 확정하려고 했던 생각인데 결국은 홍보가 잘못됐는지 어떻게됐는지 응모한 울이 적고 또 우수한 작품이 적게 나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갖고서는 도저히 바이오문화회관에 대한 건축설계로써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해 갖고서 다시 그런 방법을 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애초에 그런 것까지 잘 염두해 두셨다면 첫째,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게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갖고서 그런 작품이 나와서 뜻대로 됐겠지만, 그것을 결과가 보니까 거기서 선택해 갖고서 바이오문화회관을 건축할만한 이런 작품이 안나왔기 때문에 재차 다른 방법에 의해 갖고서 선정을 했는데, 결국 본다면 먼저 소요해 갖고 상금 주고 모든 것 한

것은 결국은 교육예산의 낭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것을 잘 준비를 철저히 해 갖고서 그런 예산까지 해 갖고서 한번에 의도한 바대로 건축설계를 확정했다고 하든지 하면 이중으로 시간도 낭비하고 또 예산도 이중으로 소모하는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거기다가 선정도 안했지만 2등에 대한 상품, 3등에 대한 상품 이런 분들에 대한 상금도 또 지급해나고 또 거기 뭐니까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당도 전부 나갔고 이런 부분이 이중지출이 된 거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의 방법으로 해서 계약까지 체결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마는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서 갖고서 교육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쪽으로 이렇게 소신있게 일을 하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계약실무자로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 공모를 할 때에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한 것이 아니고 전국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가 공모를 할 것으로 저희들도 예견을 하고 있고 지금의 계약방법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6개 업체만 이렇게 응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응모업체가 적었기 때문에 우수작품 하는데 다소 제약이 뒤따르지 않느냐 홍보라든가 입찰을 하게 되면 아주 규모가 작은 공사라 하더라도 30명, 80명 이렇게 다 응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외로 이번 바이오문화회관은 설계자가 1차에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PQ방식에 의해서 공연장 설계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을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결과 낙찰자가 다행히도 상당히 경험이 많고 우수한 그런 청사를 지은 경험이 있는 업체가 되어서 저희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11월 29일날 계약을 체결해서 납품기한을 내년도 8월 25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충북에 하나의 걸작품이 나오도록 설계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협의중에 있고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까.

● 위원장 이기수

과장님 그게 먼저 뭘니까 우리가 선정 못한 공모해서 선정 못한 경비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었죠? 얼마쯤 소요됐습니까?

아니 상금, 심사료 그 외에 여러 가지

경비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선작은 없었고 우수작이 두 편하고 가작이 한 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작 두 편 1,000만원씩하고 가작에 500만원 그 다음에 심사위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심사위원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약한 3,000만원 좀 안됩니다.

● 위원장 이기수

제가 그런 부분을 잘하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본 위원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할 수 있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좀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폈다고 그러면 1차에 사실은 공모해 가지고 당선작이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하면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됐기 때문에 그게 그런데 그렇더라도 일단은 또 그 방법밖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만약에 일반입찰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를 입찰을 해서 설계를 한다고 해도 보편은 누구나 다 달려듭니다. 달려들어서 나중에 보편은 한 달, 두 달 가도 제

기간 내에 설계해서 납품하지도 못하고 이런 결과가 벌어지기 때문에 공모해 가지고 했는데, 여하튼 간에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 3,000만원은 예산이 낭비가 아니냐하는 지적에는 동의를 합니다.

● 송대헌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나 할까요?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당선작이 없을 때는 그거를 안주면 안되는 겁니까? 그런 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걸 주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할 적에 모집공고를 할 적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선작한테는 설계권을 주고 당선작이 아닌 경우에는 1,000만원을 주고 가작 한편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준다고 이렇게 공고를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 송대헌 위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상하네요. 공고가 되었으니까 1,000만원씩 이행해야 된단니까 공고 자체도 잘 앞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다른 커다란 건축물을 지을 적에도 통상 그렇게 해 가지고 당선작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 다. 그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

시고, 다만 결과적으로는 3,000만원정도는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수

한 가지 질의만 더 드리고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지금 진옥경 위원께서 질의한 예비비가 증액됐다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진옥경 위원이 보는 각도하고 제가 보는 각도가 좀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예비비하면 결국은 이게 예비비가 많이 증액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실 투자할 곳을 못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 2004년도 예산의 최종 추가경정예산인데 예비비로 그걸 편성했다는 얘기는 이걸 어디다 넣어 가지고서 다시 투자해 갖고 금년 안에 이걸 용처를 찾지 못한 그런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첫째, 효율적인 교육 예산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첫째 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매년 결산에서 지적했듯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예비비를 증액할 것이 아니라 예비비중에 기존 편성된 예비비 쪽에서도 어느 용처를 찾아 갖고 투자를

해 갖고서 효율적인 교육예산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한 가지 항시 결산 심사 때 우리가 지적하는 불용액의 축소 차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예비비중액은 바람직하지 못한 추가경정예산편성의 한 단면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아까 사실 제가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드릴 적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기존예산 세웠을 적에 예비비가 154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142억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교육문화회관건립비 97억 5,000만원을 빼게 되면은 순수한 예비비는 45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정도 45억정도는 우리 법적으로 예비비로 확보해야 꼭 필히 확보해야될 그 예산만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기수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아까 교육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 의 희망도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은 사실 모든 세금은 법에 의해서 거둬들이지만 지출에 대한 부분은

법에 의해서 엄격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 모든 예산은 꼭 의회를 통과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회에서도 예산법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정말 공정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고, 되도록 불요불급해 갖고서 예산편성 전에 집행한다든지 이런 것도 줄일뿐더러 예산편성방법도 도교육청에서 각 교육청에다가 얼마 예산 떼어줘서 여기에 맞춰서하라, 이거보다는 일선에서 지역교육청에서부터 예산요구를 받아서 적정성인가를 판단을 해서 도교육청에 거기에 따라 갖고서 참고로 해서 편성하는 이런 방법이 더 합리적이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어제 상당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가 본다면 또 거기뿐만 아니고 중앙초등학교 이런데 보면 강당 같은 걸 건립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진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설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을 경우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가봐서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도 여기해서 안되게끔 되는 이런 장소가 적합치 않다든지 그걸 세울 수 없게끔 이렇게 공간이 없는데에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의도 보여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극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상당고부분을 포함해서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있습니까?

● 김남훈 위원

하나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다목적멀티비전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교육정보화과 62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고 사항별 설명서 보면 또 시설과로 이것이 사업내용이 이분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설치 되어 있는 다목적멀티비전설치를 보면은 이것은 또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던 말이죠. 어찌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서 주관 부서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죄송하다는 말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집행은 시설과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또 다목적멀티비전설치는 정보화과에서 발의는 했지만 나중에 집행을 하고 하는 것은 시설비목으로 해서 또 시설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 김남훈 위원

이 멀티비전 분야는 이것은 제가 생각해서는 정보화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그 시설세우는 것 때문에 시설과로 갔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 김남훈 위원

그럼 먼저 번에 이게 총무과로.....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먼저 번에도 시설과에서 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여기 보면은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집행만 그렇게 됐습니다.

● 김남훈 위원

먼저 번에 계획을 총무과에서 했고 시설과에서 집행을 했고 이번에는 발의를 정보화과에서 했고 시설과에서 하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돈이 정보화과로다가 포상금으로.....

● 김남훈 위원

그렇다면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결국에는 예산출처가 이렇게 다르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멀티비전설치하게 된 것은 청사내에다가 설치하는 거다 보니까 청사 관리는 총무과 소관사항 그래 가지고 그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 김남훈 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2억 6,400은 어디다 할 계획이예요? 통과된다면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군데정도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이게 전국교육정보화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서 받은 상금의 일부인데 지금 현재 본청에 그것이 멀티비전이 하나가 있는데 이걸 또 하나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걸 꼭 상금을 그런 분야에 써야될 필요성이 있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게 사실 저희들이 상금부분에 대해서

는 교육부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썼으면 좋으나 그랬더니 홍보를 하는 쪽으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 김남훈 위원

아니 교육부에서는 지금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에 그러한 홍보판이 없는 걸로 알고서 좋다고 했을지도 모르고, 교육부니 뭐니 하지말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입장으로 볼 적에 이러한 것을 갖다가 다른데에 또 하나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지금 하나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쪽에 우리교육청 쪽에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 부분은 저쪽 북쪽으로다 해 가지고 한 곳은 더 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김남훈 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성립전 경비로 해서 설계비를 갖다 1,100만원을 갖다가 이미 성립전 예산에 수립을 벌써 집행된 거죠? 이거는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집행중에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면 이 설계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설계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써야되지 않겠습니까?

● 김남훈 위원

아니 설계비를 그냥 손해를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해를 본다면 그 배상을 누가 해야되는 거예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지출은 해야된다고 봅니다.

● 김남훈 위원

글쎄 지출했을 경우에 이것이 아까 진옥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 부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못쓰고서 교육부에다 반납하게 된다고 그러면.....

● 김남훈 위원

금년 안에 안하면 반납을 한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국고니까 그거는 반납을 해야죠.

● 김남훈 위원

이것이 포상금 형식인데 반납이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포상금이든 어쨌든 국고로 내려온 부분 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 김남훈 위원

아니죠. 그것이 틀리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국고보조금이니까 당연히 반납해야 됩니다.

● 김남훈 위원

국고보조금이라 포상금으로 왔더라도 반납을 해야된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반납을 해야됩니다.

● 김남훈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성영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설명자료 39쪽 한번 보시죠. 38쪽에는 원어민활용 외국어교육계획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39쪽에 임차료관계 8명으로 나와 있고 주거지원비 4명, 또 포상금쪽에는 항공료가 5명, 퇴직금이 5명 계약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설명자료를 만드실 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나 하시면 7명이면 7명 자

체내 그것만 가지고 하시고 지금 현재 이쪽에 임차료나 보상금 이거는 전체 원 어민교사에 관한 부분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7명을 가지고 생각할 때 이거 이해가 가겠습니까? 제가 담당장학사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서류자체로 보서는 절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김전원**

예. 맞습니다.

● **성영용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서류를 설명자료나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체면 전체를 다루든지 7명이면 7명을 다루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이해를 하고 예산을 통과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또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진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간사 진옥경**

아까 시설비 다목적멀티비전 2004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좀더 말씀드리자면 소관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본청의 시설이면 2004년도 시설사업 예산현황에 본청 부분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도 본청 것에서 빠진 것으로 제가 착각을 하게됐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는 본청에 여러 가지 시설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설사업현황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소상하게 어디에서 발의가 됐던지 간에 하여튼 교육청에 관련한 시설인 경우에는 여기에 다 넣도록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빠짐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 **간사 진옥경**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에 관련한 지원 체제에서 LMS하고 LCMS가 합쳐서 3억이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저기한 것이기에 이렇게 두 가지에 이렇게 고가의 예산배정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 아까 질의드리려다 빠뜨렸습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주요설명자료 59쪽 아래에다가 저희들이 그걸 설명을 해냈습니다.

LMS는 Learning Management System해서

학습관리시스템이고요, LCMS라는 것은 Learning에다 Contents를 넣고 Management System해서 학습컨텐츠관리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이버학습체제가 18억 7,500을 들여서 하는데 그 중에 돌아가게 하는 기본관리체제를 LMS 학습을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고요, LCMS는 컨텐츠용 자료를 돌아가게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월치 6,750만원의 통신비도 이번에 감액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석 그대로 학습관리시스템이 LMS고 학습컨텐츠관리시스템이 LCMS입니다. 아래쪽에 설명을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 **간사 진옥경**

그렇군요.

어쨌거나 이것이 가동이 예정이 언제입니까?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3월 1일을 가동하도록 저희들이 했었는데 대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래서 12월 20일까지는 기본적으로 시험운영에 들어갈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지금 조달계약을 해서 상당히 급히 움직이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조달계약해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설비를 들어가는 상태에 있

습니다.

● **간사 진옥경**

저희들도 여기 들어가 볼 수 있습니까? 사이버가정학습체제에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이것은 모든 인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진옥경**

교육청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갑니까?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네.

● **간사 진옥경**

시험운영하시게 되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진위원장님 어떻게 보충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 **간사 진옥경**

네.

● **위원장 이기수**

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73회-제2차 예·결산소위원회]

(16시 25분 정회)

· 세출예산 각각 1조 1,592억 380만

(16시 40분 속개)

4,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
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여 세입

그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
며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부터 위
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
신 집행청 관계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침과 아울러 제2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기수, 간사 진옥경,

위 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초등교육과장 이승업,
중등교육과장 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총무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서면답변서(별첨 2)

제1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예산·결산소
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4. 12. .

위원장 이기수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written diagonally across the page. The signature appears to be '이기수' (Lee Ki-soo) in a cursive style.

(별첨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7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4. 12. 1. (수)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4. 12. 3. (금) 10:30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 2)

교육위원 서면 요구 자료

요구위원	성 영 용 교육위원	관련부서	학교운영지원과
------	------------	------	---------

요구자료 명

휴면자금 정리 금액

휴면 및 잡익계좌 정리 결과

(단위:좌, 천원)

기관명	계좌수	처리내역			비고
		학교회계	교특회계	계	
총복	2,050	22,749	9,941	32,690	

교육위원 요구 자료

요구위원	송 대 현 교육위원	관련부서	학교운영지원과
------	------------	------	---------

□ 요구자료 명

1. 충청북도교육청의 보관금 운영현황
2. 교육금고의 예금 종목과 이율표
3. 충북교육청이 선정한 예금의 종목과 이율현황 및 누계표
4. 2003년 11월 28일 금고재약정시 첨부서류로 제시한 금융상품별 제시 금리
5. 지방채 발생시 대출 제시 금리사본

□ 제출자료

1. 보관금 운영현황 <붙임 1>
2. 교육금고 예금 종목 및 이율표 : 예금 상품 금리 이율표 <붙임 2>
3. 교육청이 선정한 예금의 종목과 이율현황 및 누계표 : 예금 및 이자 수입현황 <붙임 3>
4. 금고 재약정시 제시한 금융상품별 제시금리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사무취급계약서제6조제2항 및 제3항 <붙임 4>
5. 지방채발행시 대출제시 금리사본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사무취급계약서제12조 <붙임 4>

2004년도 보관금 운영현황

일자	보관금 현황					만기현황			비고
	금액(억원)	종류	이율(%)	만기일	일수	일자	원금(억원)	이자(원)	
03.11.25	218.9	환매채	3.1	04.01.16	52	04.01.16	218.9	96,675,830	
03.11.26	64.9	환매채	3.1	04.01.16	51	04.01.16	64.9	28,111,470	
03.12.05	121.7	환매채	3.1	04.01.16	42	04.01.16	121.7	43,411,890	
03.12.11	129	환매채	3.1	04.01.16	36	04.01.16	129	39,442,190	
03.12.26	50	환매채	3.3	04.02.17	53	04.02.17	50	23,958,900	
03.12.29	257.5	환매채	3.3	04.02.17	50	04.02.17	257.5	116,404,100	
04.01.19	189.9	환매채	3.3	04.03.17	58	04.03.17	189.9	99,580,430	
04.02.04	110	환매채	3.3	04.03.17	42	04.03.17	110	41,769,860	
04.02.04	30	환매채	3.3	04.03.17	42	04.03.31	30	15,189,040	
04.02.04	232.2	환매채	3.3	04.03.17	42	04.03.17	232.2	88,172,380	
04.02.11	235	환매채	3.45	04.04.16	65	04.04.16	235	144,380,130	
04.02.13	23.4	환매채	3.45	04.04.16	63	04.04.16	23.4	13,934,210	
04.02.20	2.9	환매채	3.45	04.04.30	70	04.04.30	2.9	1,918,760	
04.02.24	371.7	환매채	3.95	04.12.17	297	04.06.14	42.35	32,197,600	
						04.10.11	21.6	34,027,390	
						04.12.17	307.75	989,142,220	
04.02.26	5.9	환매채	3.45	04.04.30	64	04.04.30	5.9	3,569,090	

일자	보관금 현황					만기현황					비고
	금액(억원)	종류	이율(%)	만기일	일수	일자	원금(억원)	이자(원)			
04.02.27	304.7	환매채	3.3	04.04.16	49	04.04.16	304.7	134,986,270			
04.03.04	185	환매채	3.45	04.05.17	74	04.05.17	185	129,398,630			
04.03.15	186	환매채	3.3	04.05.17	63	04.05.17	186	105,943,560			
04.03.17	46.5	환매채	3.3	04.05.17	61	04.05.17	46.5	25,645,060			
04.03.19	4.15	환매채	3.3	04.06.17	90	04.06.17	4.15	3,376,840			
04.03.23	5.4	환매채	3.7	04.11.01	223	04.11.01	5.4	12,206,950			
04.03.25	34.5	환매채	3.55	04.08.17	145	04.08.17	34.5	48,654,450			
04.03.31	100	환매채	3.7	04.10.15	198	04.06.10	17.05	8,291,430			
04.03.31	3.3	환매채	3.25	04.04.30	30	04.06.11	53.1	26,186,300			
04.04.16	120	환매채	3.25	04.05.17	31	04.06.14	29.85	15,333,900			
04.04.16	260	환매채	3.3	04.06.17	62	04.4.30	3.3	881,500			
04.04.22	478.4	환매채	3.3	04.07.16	85	04.05.17	120	33,123,280			
04.04.30	10.65	환매채	3.5	04.08.02	94	04.06.17	260	145,742,460			
04.05.11	300	환매채	3.25	04.06.17	37	04.07.16	478.4	367,647,120			
04.05.17	70.3	환매채	3.3	04.07.16	60	04.05.10	5.4	147,940			
04.05.18	7	환매채	3.3	04.08.02	76	04.08.02	5.25	4,732,190			
04.05.21	100	환매채	3.25	04.07.16	56	04.06.17	300	98,835,610			
						04.07.16	70.3	38,135,340			
						04.08.02	7	4,809,860			
						04.07.16	100	49,863,010			

보관금 현황				만기현황				비고	
일자	금액(억원)	종류	이율(%)	만기일	일수	일자	원금(억원)		이자(원)
						04.08.17	112.9	68,049,310	
						04.08.18	10.15	6,187,320	
04.05.21	450	환매채	3.55	04.10.15	147	04.08.19	2.75	1,695,200	
						04.08.20	18.2	11,343,830	
						04.08.23	12.05	7,758,210	
						04.10.15	293.95	420,267,960	
04.05.25	50.2	환매채	3.7	04.12.17	206	04.12.17	50.2	104,828,600	
04.05.27	27.3	환매채	3.7	04.12.17	204	04.12.17	27.3	56,454,900	
04.06.03	2	환매채	3.38	04.09.17	106	04.09.17	2	1,963,170	
04.06.25	97	환매채	3.2	04.08.17	53	04.08.17	97	45,071,780	
04.06.30	60.6	환매채	3.2	04.08.17	48	04.08.17	60.6	25,501,800	
04.08.25	26.7	환매채	2.95	04.10.15	51	04.10.15	26.7	11,005,520	
04.08.31	6.9	환매채	2.95	04.10.15	45	04.10.15	6.9	2,509,520	
04.09.02	1.2	환매채	2.95	04.10.15	43	04.10.15	1.2	417,040	
04.09.13	199.5	환매채	2.95	04.10.15	32	04.10.15	199.5	51,596,710	
04.09.23	193.4	환매채	2.95	04.11.17	55	04.09.24	9.2	0	
						04.11.17	184.2	81,880,680	
04.10.12	100	환매채	2.95	04.11.17	36	04.11.17	100	29,095,890	
04.11.12	158.5	환매채	3	05.01.17	66				진행중
04.11.24	1.6	환매채	2.85	05.01.17	54				진행중

보관금 현황				만기현황					
일자	금액(억원)	종류	이율(%)	만기일	일수	일자	원금(억원)	이자(원)	비고
04.11.30	5	환매채	2.85	05.01.17	48				진행중
04.12.01	215.4	환매채	2.85	05.01.17	47				진행중
04.12.17	79.6	환매채	2.85	05.02.17	62				진행중
계	5,933.80						5,473.70	3,991,454,630	

<붙임 2>

예금 상품 금리 이율표

농협중앙회

금리구분 및 상품		30-59일	60-90일	91-119일	120-180일	181-270일	271일-1년
중앙본부 승인금리	환매채	2.85	2.85	2.90	2.90	2.95	3.00
	C D	2.80	2.80	2.85	2.85	2.90	2.95
영업점 전결금리	환매채	2.55	2.55	2.60	2.60	2.65	2.70
	C D	2.50	2.50	2.55	2.55	2.60	2.65
정기예금	기간	1월이상	3월이상	6월이상	1년이상	2년이상	3년
	우대금리	2.30	2.60	2.70	3.00	3.10	3.20
알짜배기 기업예금	금액	5천만미만	5천만이상	1억이상	5억이상	10억이상	7일경과시 적용
	우대금리	0.00	0.10	1.30	2.00	2.60	

○ 보관금 운용 상품

- 장기 운용 자금 : 환매채

- 단기 운용 자금 : 알짜배기 기업예금

○ 환매채 적용금리 : 중앙본부 승인금리

<붙임 3>

예금 및 이자수입 현황

예금종류:신증환매채

순	예금이자 발생일	예치금액 (억원)	예치기간(일수)	이율 (%)	이자수입금액(원)	비고
1	04.01.16	219	2003.11.25-2004.1.16(52일)	3.1	96,675,830	
2	"	64.9	2003.11.26-2004.1.16(51일)	3.1	28,111,470	
3	"	121.7	2003.12.5-2004.1.16(42일)	3.1	43,411,890	
4	"	129	2003.12.11-2004.1.16(36일)	3.1	39,442,190	
5	04.02.17	50	2003.12.26-2004.2.17(53일)	3.3	23,958,900	
6	"	257.5	2003.12.29-2004.2.17(50일)	3.3	116,404,100	
7	04.03.17	189.9	2004.1.19-2004.3.17(58일)	3.3	99,580,430	
8	"	232.2	2004.2.4-2004.3.17(42일)	3.3	88,172,380	
9	"	110	2004.2.4-2004.3.17(42일)	3.3	41,769,860	
10	2004.3.31	30	2004.2.4-2004.3.31(56일)	3.3	15,189,040	
11	04.04.16	235	2004.2.11-2004.4.16(65일)	3.45	144,380,130	
12	"	23.4	2004.2.13-2004.4.16(63일)	3.45	13,934,210	
13	"	304.7	2004.2.27-2004.4.16(49일)	3.3	134,986,270	
14	04.04.30	2.9	2004.2.20-2004.4.30(70일)	3.45	1,918,760	
15	"	5.9	2004.2.26-2004.4.30(64일)	3.45	3,569,090	
16	"	3.3	2004.3.31-2004.4.30(30일)	3.25	881,500	
17	04.05.10	5.4	2004.4.30-2004.5.10(10일)	1	147,940	중도해지
18	04.05.17	185	2004.3.4-2004.5.17(74일)	3.45	129,398,630	
19	"	186	2004.3.15-2004.5.17(63일)	3.3	105,943,560	
20	"	46.5	2004.3.17-2004.5.17(61일)	3.3	25,645,060	
21	"	120	2004.4.16-2004.5.17(31일)	3.25	33,123,280	
22	04.06.10	17.05	2004.3.31-2004.6.10(71일)	2.5	8,291,430	중도해지
23	04.06.11	53.1	2004.3.31-2004.6.11(72일)	2.5	26,186,300	중도해지
24	04.06.14	29.85	2004.3.31-2004.6.14(75일)	2.5	15,333,900	중도해지
25	"	42.35	2004.02.24-2004.06.14(111일)	2.5	32,197,600	중도해지
26	04.06.17	4.15	2004.3.19-2004.6.17(90일)	3.3	3,376,840	
27	"	260	2004.4.16-2004.6.17(62일)	3.3	145,742,460	

순	예금이자 발생일	예치금액 (억원)	예치기간(일수)	이율 (%)	이자수입금액(원)	비고
28	"	300	2004.5.11-2004.6.17(37일)	3.25	98,835,610	
29	04.07.16	478.4	2004.4.22-2004.7.16(85일)	3.3	367,647,120	
30	"	70.3	2004.5.17-2004.7.16(60일)	3.3	38,135,340	
31	"	100	2004.5.21-2004.7.16(56일)	3.25	49,863,010	
32	04.08.02	5.25	2004.4.30-2004.8.2(94일)	3.5	4,732,190	
33	"	7	2004.5.18-2004.8.2(76일)	3.3	4,809,860	
34	04.08.17	34.5	2004.3.25-2004.8.17(145일)	3.55	48,654,450	
35	"	97	2004.6.25-2004.8.17(53일)	3.2	45,071,780	
36	"	60.6	2004.6.30-2004.8.17(48일)	3.2	25,501,800	
37	"	112.9	2004.5.21-2004.8.17(88일)	2.5	68,049,310	중도해지
38	"	10.15	2004.5.21-2004.8.18(89일)	2.5	6,187,320	중도해지
39	"	2.75	2004.5.21-2004.8.19(90일)	2.5	1,695,200	중도해지
40	04.08.20	18.2	2004.5.21-2004.8.20(91일)	2.5	11,343,830	중도해지
41	04.08.23	12.05	2004.5.21-2004.8.23(94일)	2.5	7,758,210	중도해지
42	04.09.17	2	2004.6.13-2004.9.17(106일)	3.38	1,963,170	
43	04.10.11	21.6	2004.2.24-2004.10.11(250일)	2.5	34,027,390	중도해지
44	04.10.15	293.95	2004.5.21-2004.10.15(147일)	3.55	420,267,960	
45	"	26.7	2004.8.25-2004.10.15(49일)	2.95	11,005,520	
46	"	6.9	2004.8.31-2004.10.15(43일)	2.95	2,509,520	
47	"	1.2	2004.8.31-2004.10.15(43일)	2.95	417,040	
48	"	199.5	2004.9.13-2004.10.15(32일)	2.95	51,596,710	
49	04.11.01	5.4	2004.3.23-2004.11.1(223일)	3.7	12,206,950	
50	04.11.17	184.2	2004.9.23-2004.11.17(55일)	2.95	81,880,680	
51	"	100	2004.10.12-2004.11.17(36일)	2.95	29,095,890	
52	04.12.17	307.75	2004.2.24-2004.12.17(297일)	3.95	989,142,220	
53	"	50.2	2004.5.25-2004.12.17(206일)	3.7	104,828,600	
54	"	27.3	2004.5.27-2004.12.17(204일)	3.7	56,454,900	
	계	5,464.50			3,991,454,630	

예금 및 이자수입 현황

예금종류:알짜배기기업예금

순	예금이자 발생일	이자수입금액(원)	비고
1	2004.1.25	70,781,010	
2	2004.2.29	146,501,570	
3	2004.3.28	69,905,170	
4	2004.4.25	17,415,600	
5	2004.5.23	15,204,710	
6	2004.6.27	16,172,480	
7	2004.7.25	24,878,720	
8	2004.8.29	19,393,600	
9	2004.9.26	98,321,650	
10	2004.10.24	9,738,300	
11	2004.11.28	80,377,670	
	계	568,690,480	

<붙임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사무취급계약서(안)

(2003. 11. 28)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사무취급계약서(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사무취급에 관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을 "갑"으로 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충청북도지역본부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금고업무) ① "갑"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본 회계"라 한다.)에 속하는 다음 사항의 금고(이하 "교육금고"라 한다.) 사무를 "을"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1. 세입·세출금의 출납 및 보관
2.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보관
3.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4. 전 각 호에 관한 교육금고 사무

② "을"이 본 계약에 의한 교육금고 업무를 직접 취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갑"의 교육금고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을"의 책임 하에 "을"의 산하지부, 지점(출장소 포함)과 지역조합(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교육금고 사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 계약에서 "을"이라 함은 "을"의 산하기관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제2조 (금고업무의 취급점의 설치 및 지정) ① "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갑"의 교육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을"의 주사무소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청주청원시군지부에 교육금고를 설치하고 "갑"의 청사 내에 교육금고업무 전담창구(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따로 설치하고 운영한다.

② "을"은 "갑"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교육청의 교육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을"의 산하기관의 주사무소 또는 당해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하 "당해 교육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에 "갑"과 "당해 교육장"이 정하는 수의 전담직원을 고정 배치하여 상근하게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를 "갑"과 "당해 지역교육청"의 청사 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을"은 "갑"과 "당해 교육장"이 산정한 소정의 재산임차료를 별도 부담한다.

⑤ "을"은 제1항의 "을"의 주사무소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청주청원시군지부에 "충청북도 교육금고"임을, 출장소에는 "충청북도 교육금고 출장소"임을, 제2항의

"을"의 산하기관 주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는 "충청북도 교육금고 ○○교육청 출장소" 임을 창구에 표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⑥ "을"이 "을"의 산하기관을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명칭과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과 "당해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 ①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에 상근하는 전담직원은 근무 기간을 최소한 1년 이상으로 하며, "갑"과 "당해 교육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복무한다.

② 교육금고의 근무시간 및 휴일은 "갑"과 "당해 교육장"의 근무시간 및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만, "갑" 또는 "당해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① "을"은 본 계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교육금고 업무에 관한 관계법령과 조례·규칙 및 "갑"이 정하는 제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갑"과 "당해 교육장"에게 성실히 이행한다.

② "갑"은 교육금고 업무에 관하여 "을"을 지도·감독한다.

제5조 (책임) ① "을"은 교육금고 사무를 취급함에 있어 "갑"과 "당해 교육장"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② "을"이 교육금고 사무를 취급함에 있어 "갑"과 "당해 교육장"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본 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상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과 "당해 교육장"에게 배상한다.

제6조 (보관금의 관리 및 이자) ① "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해 보관하는 현금(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을 교육금고에 집중 관리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보관금에 대하여 보통예금의 이율과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이자를 "갑"에게 지급하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자는 6월 30일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는 12월 31일에 지급한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갑"은 보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등 저축성예금 중에서 예금종목을 지정하여 대체 예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을"이 취급하는 예금종목에 의한 이율과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이자를 만기일 또는 해지일에 "갑"에게 지급한다.

④ "갑"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원 확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별도 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갑"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보관금을 이체하여야 한다.

⑤ "을"은 "을"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등 저축성예금 종목 중 금리 등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출원별 거래계좌의 설치) ① "을"은 제2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금고 및 출장소에 "갑"이 지정하는 지출원별로 거래계좌를 설치한다.

② "을"은 "갑"과 "당해 교육장"이 지정하는 일상경비출납원 및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거래청약이 있을 경우 공금지급대행점 지정을 승락하고 출납원별로 거래계좌를 설치한다.

제8조 (지출한도액 관리) ① "갑"은 "을"에게 교육금고의 자금잔액 범위 내에서 지출원별로 지출한도액의 배정을 지시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배정지시 받은 지출원별 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지출원의 지급명령에 의해 자금을 지급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배정지시 받은 지출한도액의 집행상황을 총괄과 지출원 계좌별로 별도 구분하여 정확히 계리하고 매 일일별 내역을 출력하여 관리한다.

제9조 (수납 및 지급) ① "을"은 수납한 세입금을 수납즉시 온라인 송금으로 교육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지정하는 지출원(출납원 포함)이 통상·송금·집합 지급명령(예금청구서 포함)을 발한 경우에 "을"은 채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되, 송금 또는 집합 지급명령을 받은 때에는 송금하고자 하는 해당구좌에 즉시 온라인 송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지급 명령을 받았으나 송금할 지역 내에 "을"의 산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을"의 책임 하에 다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과 별도 협약하여 "갑"이 지정하는 은행의 해당구좌에 즉시 온라인 송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송금된 자금이 해당구좌에 입금되는 즉시, 당해 지출원과 출납원 또는 채주 등에게 문서(입금전표)나 전화로 통보한다.

⑤ "을"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 입금하거나 송금한 때에는 "을"은 제12조 제1항의 금리와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이자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지정한 지출원이 발하는 통상 지급명령서에 요대체 고무인을

날인한 것과 산하기관의 출납원이 예금 청구서에 대체구좌를 명기한 것에 한하여는 현금 지급을 금하며 이에 수반하는 취급상 손해를 끼친 경우 "을"은 손해액을 변상한다.

제10조 (지급명령 과오 시 조치) "을"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갑"의 지급명령에 과오가 있을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고 즉시 그 뜻을 당해 지출원에게 통지한 후 당해 지출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① 지방채 발행액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의회의 의결 범위내의 금액으로 하고 일시차입금은 "갑"의 예산 총액에 정하여진 범위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갑"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일시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차입총액과 차입기간 등의 차입조건을 사전에 "을"에게 통보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보 받은 지방채 발행 및 일시차입금액에 대하여 다른 여신에 우선하여 차입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통보한 차입조건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입하되 실제자금의 일시차입은 "을"이 보관하는 현금이 "갑"이 지정하는 지출원의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총액에 미달되는 때에 한하여 당일의 자금부족 잔액만을 차입한 것으로 한다.

제12조 (상환이자) 지방채와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제11조 제4항에 의한 매일의 지급자금 부족 잔액에 대하여 "을"이 취급하는 대출의 우대금리(일반자금 대출의 이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다.

제13조 (비용부담) 교육금고의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국내외 송금수수료 포함)은 "을"이 전액 부담한다.

제14조 (세입·세출 일계표 및 월계표의 작성 제출) ① "을"은 매일 교육금고의 세입·세출금의 출납상황과 보관금 잔액을 기재한 세입·세출 일계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익일 오전까지 "갑"과 "당해 교육장"에게 제출한다.

② "을"은 매월 세입·세출금의 출납상황과 보관금 잔액을 기재한 세입·세출 월계표를 작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익월 5일까지 "갑"과 "당해

교육장"에게 제출한다.

제15조 (지급명령서 및 공금지급 명령통지서 공급) "을"은 본 회계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소정서식의 지급명령서 용지를 조제하여 "갑"이 지정하는 지출원에게 공급한다

제16조 (협조의무) "갑"과 "당해 교육장"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을"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집무시간외의 세입·세출금 출납조치
2. 충청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공무원의 가계자금용자에 관한 사항
3. 교육금고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행정 사항

제17조 (금고의 검사) "갑"과 "당해 교육장"은 "을"의 보관금에 대한 출납상황과 장부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교육장은 충청북도교육금고 당해 교육청출장소에서 취급하는 보관금에 한한다.

제18조 (계약의 변경) 제23조의 계약기간 내라 할지라도 "갑"과 "을"이 합의할 때에는 본 계약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갑"은 계약기간 만료전이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을"에 대하여 교육금고의 사무취급을 중지하게 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 교육금고 사무처리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갑"의 감독관청의 명령이 있을 때
3. "을"이 본 계약상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때
4. "갑"의 형편에 의하여 사무취급의 중지 또는 계약의 해지가 필요한 때

제20조 (계약 해지시의 인계) "갑"이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금고의 사무취급을 중지하게 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을"은 "갑"과 "당해 교육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출납계산서, 수입지출 미필명세서, 보관현금과 유가증권 등을 "갑"과 "당해 교육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한다.

제21조 (계약해지 시 사전 승락) "을"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의 3월 전까지 "갑"의 승락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인감계 제출) "갑"과 "당해 교육장"은 지급명령 등에 사용할 인감을 "을"에게 "을"은 세입금의 수납과 보고 등에 사용할 인감을 "갑"과 "당해 교육장"에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계약문구의 해석) "갑" "을"간에 본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3년 11월 29 일

"갑" 충청북도교육감 김 천



"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충청북도지역본부장 한 진

